2022. 2. 24(목) 10:00
광주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 3층 대강의실

2022년도 정기총회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2022. 2. 24(목) 10:00
광주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 3층 대강의실

2022년도 정기총회 회의자료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목 차

1. 창립선언문 ……3쪽

2. 개회선언 ……4쪽

3. 2021년도 감사보고 ……5쪽

4. 안건
1호 안건 : 2021년 사업결과 및 결산안의 건 ……7쪽

2호 안건 : 정관개정의 건 ……39쪽

3호 안건 : 임원 선출의 건…… 43쪽

4호 안건 : 2022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건……45쪽

5호 안건 : 청소년노동인권센터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건 ……59쪽

5. 폐회

1 창립선언문

□ 청소년은 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주인공이다. 따라서 청소년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은 그 나라의 미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또한 청소년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튼튼히 하고 보호하는 일은 한 가정의 문제를 넘어서 전 사회적이고 국가적인 책임이자 의무임은 두말 할 필요가 없다.

□ 그러나 이미 세계 12위권의 경제적 성장을 이루었고, 곧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앞두고 있다는 우리나라의 현실은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국가적 책임과 의무를 소홀히 한 채 모든 문제를 가정에 맡기거나 심지어는 청소년 개인이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방치하고 있다.

- 2009년 통계청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현재 15세에서 19세의 300여만 명의 청소년 중에서 20여만 명이 취업하여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근로조건은 30여 OECD 국가 중 가장 열악한 형편이다.

- 청소년취업자의 대부분은 6개월 미만의 비정규직이며, 따라서 고용불안과 해고위협에, 저임금과 임금체불, 심지어는 성희롱과 폭력 등의 심각한 인권침해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는 형편이다.

□ 따라서 오늘 우리의 아들 딸이자 나라의 미래인 청소년들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과 정당한 노동권을 보장하고, 부당한 인권침해를 막아야 한다는 시대의 요구를 받들어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의 출범을 힘차게 선언하는 바이다.

하나, 우리는 <연구, 조사와 교육>, <홍보와 실천>, <연대와 협력> 등의 활동을 통하여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확장시키는데 앞장설 것을 굳게 다짐한다.

하나, 우리는 광주지역의 청소년, 교육, 노동, 인권과 관련된 모든 단체와 개인에 문호를 개방할 것이며, 관련 기관과 단체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광주가 명실상부한 민주, 평화, 인권의 도시로서 그 위상을 분명히 하고, 나아가 우리나라가 세계적 청소년 노동인권 국가로 거듭나는데 일조할 것을 힘차게 선언한다.

2009. 10. 30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2 개회 선언

□ 성원보고

<table>
<tr><td colspan="2">집행위원장</td><td>참교육
학부모회</td><td>광주
YMCA</td><td>전교조
광주지부</td><td>광주비정규직
센터</td></tr>
<tr><td colspan="2"></td><td></td><td></td><td></td><td></td></tr>
<tr><td colspan="2">광주여성
노동자회</td><td>광주
청년유니온</td><td>광주교육희망
네트워크</td><td>전국여성
노동조합</td><td>민주노총
광주법률원</td></tr>
<tr><td colspan="2"></td><td></td><td></td><td></td><td></td></tr>
<tr><td colspan="6">개인 회원</td></tr>
<tr><td rowspan="2">참석
인원</td><td>참석</td><td></td><td rowspan="2">불참</td><td colspan="2" rowspan="2"></td></tr>
<tr><td>위임</td><td></td></tr>
</table>

□ 회의개요

- ❍ 일　　시 : 2022. 2. 24(목) 10:00
- ❍ 장　　소 : 광주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 3층 대강의실
- ❍ 참석대상 :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단체회원 및 개인회원

□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비　고
10:00~10:05	5`	❍ 참석자 소개 및 개회	정보형 집행위원장
10:05~10:10	10`	❍ 2021년도 감사보고	김류한 감사
10:10~10:40	30`	❍ 2021년도 사업결과보고	각 국별 국장
10:40~11:00	20`	❍ 2021년도 결산안 보고	정다운 사무국장
11:00~12:00	60`	❍ 안건상정 및 심의	총회
12:00 ~		❍ 폐회	

3 2021년도 감사보고

청소년 노동인권네트워크 회칙에 따라 2021년도 감사를 실시하고 다음과 같이 감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감사일시: 2022년 2월 17일 오후 2시
대상기간: 2021. 1.1~ 12.31
장　　소: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사무실

1. 코로나로 인한 사업공백에도 헌신적으로 일해주신 사무국과 교육국등 모든 활동가들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단체 분담금은 1개 단체를 제외하고 가입단체 모두 완납하였습니다. 다만, 2021년 분담금 전액 미납단체에 대해 네트워크 참여 의사를 다시 한번 명확히 타진할 것과, 참여 의사에 따른 분납금 납부 여부에 대한 관리를 주문하였습니다.

2. 감사지적사항으로 개선이 요구되었던, 온라인 수업지원에 대해서도 나름 노력을 하신 부분은 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었습니다. 사무국과 교육국이 안정된 만큼 교육국의 강사들에 대한 질 높은 교육으로 강사들의 역량을 높이는 부분에 더 신경 써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주춤했던 상담국의 활동도 좀 더 신경써서 2022년도에는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주문합니다.

3. 네트워크 창립 이후 처음으로 진행하는 회원 감사키트 사업으로 집행위원장과 사무국장이 직접 찾아가 그동안 후원해 주심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하는 과정 자체는 좋은 시도였다고 생각합니다. 홍보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을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좀 더 신경써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4. 이외 집행내역의 영수증빙은 전반적으로 잘 정리되어 있었으나, 사무국장의 교체로 인한 업무공백으로 사소한 부분을 정리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재정부분에 있어서도 코로나로 인한 수업공백이 있었음에도 부채를 해결하고 사무국 재정을 안정 시킨 점은 그간의 노고를 짐작케 합니다.

2022. 2. 18

감사 임혜정 혜정　　김류한 김류한

4 안 건

※ 제 1호 안건 : 2021년도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사업보고 및 결산안의 건

1. 상정이유

○ 2021년도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의 사업보고 및 결산안을 승인받고자 함.

2. 주요근거

제10조의 2(의결사항) 정기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집행위원장의 임면 및 감사의 선출과 해임 2. 단체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사업계획의 승인 5. 기타 중요사항

3. 의결주문

○ 2021년도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의 사업보고 및 결산안을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1년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사업결과 보고

1.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현황

1)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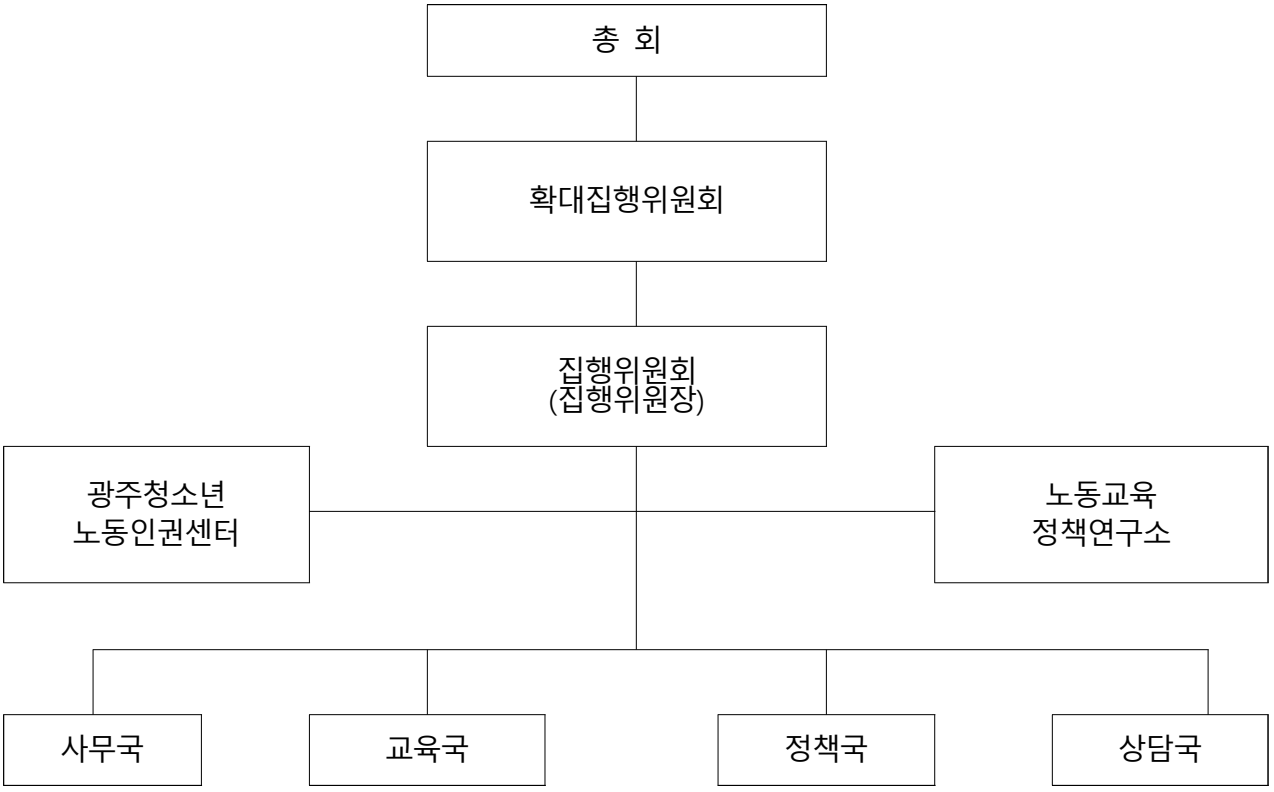

2) 회원 현황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단체 회원			
연번	소속 단체	성함	직책
1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김재옥	지부장
2	광주YMCA	문기전	지부장
3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	김경희	지부장
4	광주비정규직센터	여규식	소장
5	민주노총 법률원	홍관희	노무사
6	광주여성노동자회	서연우	부회장
7	전국여성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김경미	지부장
8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	윤영조	대표
		박서영	사무처장
9	광주청년유니온	김설	위원장
		김다정	사무국장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후원회원			
연도	신규 회원	탈퇴 현황	총 회원
2018년	10명	4명	50명
2019년	15명	4명	61명
2020년	31명 (강사 22명)	6명	86명
2021년	**7명**	**3명**	**90명**

후원회원 명단 (가나다 순)

강민수 강창현 고은경 구희남 김경미 김경희 김덕우 김류한 김미순 김미현 김민경 김민희 김병일 김비룡 김애임 김양훈 김연준 김영용 김용태 김은정 김재호 김점숙 김정은 김태옥 김현아 김현용 김희정 명등룡 문경호 민동환 박서영 박수희 박용서 박종평 박종필 박태호 박현준 백양자 서연우 선미숙 성건식 손용섭 손정기 신수연 양정규 여윤호 유승직 윤종현 윤혜경 은희모 이다영 이미애 이민호 이상일 이선봉 이승희 이연주 이완규 이유진 이종윤 이지현 이혜정 이효선 임동헌 임 미 임수준 임정호 임혜정 장애화 전명훈 전성은 정공주 정보형 정예슬 정찬호 조동근 조아영 주귀숙 차유미 차현국 최경희 최루카스 최수경 최 옥 최옥경 표영민 한가람 한상규 한정일 허재준 (90명)

2. 2021년 주요 사업

1) 세부 사업 내용

분야	사업명	내용
상담국	상담사 회의	-
	상담사 역량강화 연수	-
교육국	교안 개발 수정	- 기존 교안 업그레이드
	학교로 찾아가는 노동인권 교육	- 중학교 490학급 - 인문계 고등학교 78학급 - 특성화 고등학교 90학급 - 특수학교 11학급
	강사단 역량강화 교육	- 5회 10시간
사무국	찾아가는 청소년 노동인권 캠페인	- SNS에 바뀐 노동상식 게재
	인권단체 협력사업 - 학교 밖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및 상담사업	- 직업학교 2곳, 대안학교 7곳, 지원센터 1곳 등 총 21학급(264명) 교육
	현장실습 및 도제학교 대응 사업	- 현장실습 토론회 개최
	특성화고 실험실습실 유해환경 개선사업	-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조직점검 및 개편사업	- 교육국 구성 - 확대집행위 구성
	회원 조직사업	- 감사키트 제작 및 전달
	현안 및 연대사업	- 전국현장실습대책회의 - 혐오문화대응네트워크 - 경주S공고 이준서 학생 진상규명과 직업계고 기능반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 - 광주NGO센터 - 명진고대책위원회
센터	생애 첫 알바노동 성공 키트	- 참여인원 250명

	정책토론회	- 대면 33, 유튜브18, 총 51명
	청소년 알바 친화사업장 선정	- 친화사업장 지원 76개소 (기선정사업장 64개소, 신규선정 26개소) -친화사업장 발표회 27명
	초단시간 청소년 노동자 지원금	- 50명 - 10만원 상당 광주상생카드 지원 - 전국 최초로 실시
	알바지킴이 상담센터 운영	- 상담자수 405명
	알바지킴이 모바일 앱 운영	- 가입자수 1명 - 효율성 저하로 2월 폐기
	찾아가는 노동상담소	- 하반기 대학교 요청 증가 - 19명 상담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	- 청소년기관, 종사자 등 교육대상 확대
	알바지킴이 양성교육	- 청소년알바친화사업장 모니터링과 선정에 주도적 참여
	청소년노동 인권센터 홍보 및 캠페인	- SNS 홍보 강화 및 포스터, 현수막 광고 증가
	대학생 서포터즈 운영	- 상반기 6명, 하반기 6명
	청소년 노동 인권 문화체험	- 전태일 연극 관람
연구소	연구소 카페 운영	- 노동인권 연구자료 수집 및 보급
	정부 연구 용역 사업	- 노동인권교육 정부정책 참여
	노동인권아카데미 운영	-
	교사 연구회 운영	- 노동인권교육 참여 교사 확산
	노동인권교육 컨설팅단 활동	- 노동인권교육 확산

2) 2021 네트워크 활동일지

월	사 업 내 용	비고
1월	- 6일 집행위원회의 - 13일 현장실습 자료검토단 회의 - 15일 집행위원회의 - 19일 혐오문화대응네트워크 회의참석 - 22일 현장실습 자료 검토단 회의 - 25일 찾아가는 청소년 인권간담회(선거권) 참석 - 26일 전국현장실습 대책회의 온라인회의 참석 - 27일 집행위원회의 - 28일 쓴소리위원회 온라인 회의 - 28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성과와 과제 온라인 회의	
2월	- 2일 교육국 회의 - 3일 국민권익위(센터) - 3일 집행위원회의 - 5일 센터 워크숍 - 8일 민관협치 실무협의회 - 16일 현장실습 자료 검토단 회의 - 16일 현장실습 대책위 회의 - 17일 강사단 전체회의 - 19일 집행위원회의 - 22일 현장실습 토론회 - 25일 쓴소리위원회 - 26일 네트워크 정기총회	
3월	- 10일 현장실습 대책회의 - 15일 집행위원회의 - 16일 혐오문화대응네트워크 회의참석 - 17일 민관협치 인권교육분과 회의 - 17일 강사단 전체회의 - 19일 확대집행위원회의	
4월	- 2일~3일 노동자건강권 워크샵 참석 - 5일 민관협의회 본회의 참석 - 6일 교육국 회의 - 7일 민관협치 인권교육분과위원회 참석 - 8일 집행위원회의 - 13일 네트워크 노동인권강사단 전체회의 참석 - 27일 학교밖노동인권교육 자문위원회 회의	
5월	- 4일 교육국회의	

	- 11일 집행위원회의 - 17일 확대집행위원회의 - 26일 강사단 역량강화교육 - 26일 민관협치 인권교육분과 회의 - 27일 현장실습대책위 회의 출장	
6월	- 1일 학교밖 관계기관 미팅 - 8일 교육국 회의 - 15일 화순노예PC방 기자회견 참석(법원) - 15일 화순노예PC방 대책회의 참석 - 15일 집행위원회의 - 16일 민관협치 인권교육분과 회의 - 22일 화순노예PC방 기자회견 참석(노동청) - 23일 법원 앞 1인 피켓팅 - 24일 법원 앞 1인 피케팅 - 25일 법원 앞 1인 피케팅 - 28일 법원 앞 1인 피켓팅 - 30일 강사단 역량강화교육 온라인 교육	
7월	- 8일 청소년쉼터 소장단 회의 - 12일 혐오대응문화네트워크 회의참석 - 15일 교육국 회의 - 19일 집행위원회의 - 20일 확대집행위원회의 - 21일 민관협치 인권교육분과 회의 - 21일 강사단 역량강화교육	
8월	- 5일 교육국회의 - 11일 민관협치 인권교육분과 회의 - 11일 현장실습대책위 회의 - 18일 강사단 하반기 평가회 - 19일 집행위원회의	
9월	- 1일 교육국회의 - 3일 혐오대응문화네트워크 토론회 참석 - 10일 직업학교 노동인권교육 - 14일 집행위원회의 - 15일 민관협치 인권교육분과 회의 - 16일 노동인권교육 홍보 관련 미팅 - 28일 확대집행위원회의 - 28일 화순PC방대책위 전체회의 참석 - 29일 현장실습대책위 회의	
10월	- 10일 집행위원회의	

	- 13일 여수현장실습생 사망사고 관련 출장(여수) - 14일 고 홍정운군 순천 추모회(순천) - 19일 집행위원회의 - 19일 여수현장실습생 사망사고 관련 전남교육청 앞 기자회견 - 20일 민관협치 노동인권교육분과 회의 - 20일 강사단 역량강화교육 1(임금계산) - 26일 전태일연극 출범식 참석 - 27일 강사단 역량강화교육 2(임금계산) - 27일 현장실습 알려내기, 길거리 공개수업	
11월	- 5일 민관협의회 실무자회의(하반기) - 9일 교육국회의 - 11일 민관협치 워크샵 - 17일 민관협치 인권교육분과 회의 - 17일 강사단 역량강확육 - 22일 집행위원회의 - 24일 알바친화사업장 발표회(참석) - 25일 현장실습 토론회 참석 - 26일 확대집행위원회의	
12월	- 3일 민관협의회 본회의 참석 - 6일 교육국회의 - 10일 집행위원회의 - 14일 전태일 연극 참석 - 15일 민관협치 노동인권교육분과 회의 - 16일 현장실습대책위 온라인 회의 - 22일 강사단 하반기 평가회 - 28일 학교밖 노동인권교육 자문위원회의	

□ 2021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총괄평가

1. 계속되는 코로나 상황으로 대면 행사과 비대면 행사를 동시에 진행하게 되었으나 여전히 활동하는 부분에 있어서 쉽지 않음. 코로나 상황이 지속될 것을 감안하여 거리두기제한 지침을 지키되 예년보다 활동적인 사업 진행이 필요.

2. 조직 개편 이후 확대집행위원의 신설로 21년을 평가해 보고자 하였으나 1년의 운영으로 평가내릴 수 없다고 판단하여 1년더 확대집행위원 체제를 유지하기로 함. 내년 총회에 평가가 필요해 보임.

3. 청소년 노동인권 캠페인 사업은 전임자 교체와 산발적으로 확진자가 늘어 계획 및 실행에 옮기지 못했음. 코로나19 장기화에 맞추어 학교 등 대응방식이 생겨남에 따라 소수의 인원이지만 다양한 루트로 청소년을 만날 수 있는 대면 방식과 지속적인 온라인 캠페인을 동시에 진행이 필요.

4. 학교 밖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은 30학급을 계획했으나, 산발적 감염에도 21개 학급을 운영하여 20년에 비교하여 코로나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함. 처음으로 진행한 직업학교 대상 노동인권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 점차 확대 및 발굴이 필요

5. 광주지역 특성화고 현장실습 대응 사업으로 현장실습 자료 검토단 운영, 특성화고 현장실습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정책토론회 진행하였으나 4월 전임자 교체로 이후 추모사업 등 이후 활동에 대한 동력 잃음. 적극적인 활동 필요.

6. 교육국이 신설되어 교안개발팀, 교육기획팀을 꾸려 안정적인 운영을 한 점이 돋보임. 교안 제작도 체계화되어 완성도 높은 교안 제작이 가능해짐. 강사들 의견을 듣고, 요구하는 교육진행을 통해 노동인권강사들의 역량강화에 도움이 됨.

7.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이 중학교 490학급, 일반계고 78학급, 특성화고 90학급, 특수학교 11학급, 학교밖기관 14학급, 직업학교 8학급으로 코로나로 인해 학교 대응방식이 달라져 예년보다 확대 진행됨

8. 연구소에서는 노동인권교과 담당 교사의 수업을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개발하고 교육부 및 노동부 연구 용역에 참여함. 코로나 상황에서 미뤄진 사업들도 있었으나 노동인권교육 컨설팅단 활동으로 관내 13개 특성화고에 정규교육과정의 선택교과로 편성 확정하는 등 성과가 돋보임.

9. 준비된 상담인력이 있었지만 코로나19로 계획에 따른 사업을 진행하지 못함. 계속되는 코로나 상황에 맞추어 대면상담과 청소년노동인권 상담 홍보에 대한 고민이 필요.

10. 화순PC방 사건, 여수 현장실습생 사망사고 등 현안 사업에 발품을 파는 등 적극적 연대는 가능했으나 그 외 연대활동은 활동이 미비하여 네트워크 차원에서도 소극적 역할에 그침.

□ 2021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확대집행위원회의 구성·운영보고

회 의 차 시	회 의 일 정	회 의 내 용
1차	3.19	- 신임 사무국장 채용 관한 건 - 감사 선임에 관한 건 - 21년 예산안에 관한 건
2차	5.17	- 확대집행위원구성에 관한 건 - 21년 예산안에 관한 건 - 현장실습메뉴얼(교육부)에 관한 내용을 집행부 안건으로 정하여 논의.
3차	7.20	- 보고 안건으로 진행
4차	9.28	- 전태일 연극 추진위원회 참여의 건
5차	11.26	- 회원지원사업 관련한 건

□ 2021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집행위원회의 구성·운영보고

회 의 차 시	회 의 일 정	회 의 내 용
1차	01.06	- 21년 사업계획에 관한 건 - 총회 준비
2차	01.27	- 21년 사업계획에 관한 건 - 총회 준비
3차	02.03	- 20년 사업평가에 관한 건 - 신임 사무국장 채용에 관한 건
4차	02.21	- 정기총회 회의자료 검토에 관한 건 - 교육국장(강사단 대표) 선임에 관한 건 - 신임 사무국장 채용에 관한 건
5차	03.15	- 정기총회 회의 방식 평가 - 교육국장(강사단 대표) 선임에 관한 건 - 신임 사무국장 채용에 관한 건 - 인권단체 협력사업에 관한 건
6차	04.08	- 인권단체 협력사업에 관한 건 - 교육국 활동비 예산 관련 건
7차	05.11	- 직업교육발전위원회 참여의 건 - 확대집행위원 구성 변화의 건
8차	06.15	- 화순 노예PC방 사건 대책위 참석 여부의 건
10차	07.19	- 확대집행위 개인회원 선정의 건
11차	08.19	-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및 대상 확대 관한 건
12차	09.07	-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및 대상 확대 관한 건
13차	10.13	- 여수실습생 사망사고 관련의 건
14차	10.19	- 여수실습생 사망사고 관련의 건
15차	11.22	- 여수실습생 사망사고 현장실습폐지 활동 관련 - 회원지원사업 : 감사키트 제작
16차	12.07	- 22년 총회준비 - 회원지원사업 : 감사키트 제작 - 네트워크 리플렛 제작 - 홈페이지 및 SNS 홍보 활용방안 논의

□ 2021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사무국 사업결과 보고

1. 청소년 노동인권 캠페인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3. ~ 12.
❍ 사업대상 : 광주지역 청소년
❍ 사업내용 : 광주지역 청소년 대상 캠페인 운영
❍ 추진실적 : 없음

2) 사업평가 및 개선사항

- 상반기 직업계고 현장실습 실태 알리기, 하반기 도제학교 실태 알리기 홍보 캠페인을 계획하였으나 전임자 교체와 산발적으로 확진자가 늘어 계획 및 실행에 옮기지 못했음. 뒤늦게 온라인 캠페인을(12월) 진행하였으나 페이지 활성화 등의 문제로 자료를 올리는 데에 그침.
- 코로나19 장기화에 맞추어 학교 등 대응방식이 생겨남에 따라 소수의 인원이지만 다양한 루트로 청소년을 만날 수 있는 대면 방식과 지속적인 온라인 캠페인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짜야 함.

2. 학교 밖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3. ~ 12.
❍ 사업대상 : 광주지역 학교 밖 청소년 관련기관 소속 청소년
❍ 사업내용 : 광주지역 학교 밖 청소년 기관으로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 실시
❍ 추진배경 : 매년 광주시와 진행하고 있는 인권단체협력사업의 일환으로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찾아가는 노동인권 교육을 실시하고자 함.
❍ 사업일정

세부사업명	세부사업내용	추진시기
관련기관 간담회	- 2020년 사업평가 및 2021년 사업계획 및 논의 - 학교 밖 청소년 기관 및 학교 간담회 진행	2021. 02. ~ 04.
노동인권 수업	- 근로계약서 작성하기 - 최저임금 알아보기 - 생계비내역서 작성하기 - 아르바이트 상담	2021. 06. ~ 11.
캠페인	- 온라인 캠페인 진행	2021. 03. ~ 11.

❍ 학교 밖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추진실적

구분	학교명	학급(인원)	교육 횟수
직업학교	광주국제직업전문학교	5반(86명)	1회
	NEW국제직업전문학교	3반(47명)	1회
대안학교	무진일움학당	1반(14명)	2회
	해밀학교	1반(3명)	1회
	화월주성장학교 다온	1반(5명)	1회
	지혜학교	1반(10명)	1회
	새날학교	1반(12명)	1회
	용연학교	3반(12명)	1회
	푸른꿈창작학교	4반(60명)	1회
지원센터	광산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1반(15명)	1회
		21학급 (264명)	

2) 사업평가 및 개선사항

- 30학급을 계획하였으나 산발적 코로나19확진으로 인해 취소하는 학교가 늘어났으나 대부분 기간을 연기 또는 추가 신청으로 인해 21학급 교육 진행.
- 자문위원회의 구성으로 교안개발 및 교육에 도움이 많이 됨. 학교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공통교안 제작으로 기본틀이 만들어진 성과가 있음. 신청서를 제작할 때에 교육과정을 세분화하여 필요한 과정을 집중적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자문위원회의 의견이 있었음.
- 학교밖 교육기관들의 신입생 모집이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인권교육의 대상을 더 확대해서 교육을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음. 학교밖 기관의 다양성에 따라 교안을 추가로 개발해야하는 필요성을 느낌. 학교기관의 경계에 있는 청소년들을 포함하고 코로나 상황이 더 심각해질 때를 대비한 대면교육방식이 아닌 다른 교육컨텐츠를 제작, 활용하는 방법도 필요함.
- 직업학교(직업계고) 노동인권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 점차 확대 및 발굴이 필요함.

3. 현장실습 및 도제학교 대응 사업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1. ~ 2021. 12.

❍ 사업내용 : 현장실습 및 도제학교 관련 대응 사업

❍ 추진방법

세부사업명	세부사업 목적
정책토론회	- 광주지역 현장실습 및 도제 관련 정책토론회
기자회견	- 여론을 통해 현장실습 및 도제의 문제점 알리기
추모사업	- 현장실습 도중 사망한 분들의 추모 - 현장실습에 대한 여론 환기

2) 사업평가 및 개선사항

- 2020년에 모은 자료를 가지고 상반기 현장실습 토론회를 개최함. 4월 전임자 교체 이후 추모사업 등 이후 활동에 대한 동력 잃음.

4. 특성화고 실험실습실 유해환경 개선 사업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2. ~ 2021. 12.

❍ 사업대상 : 광주광역시교육청

❍ 사업내용 : 특성화고 실험실습실 유해환경 실태조사 및 개선 계획 수립과 이를 위한 위원회 설립 요구

❍ 추진방법 : 전교조 직업교육위원회와 연대

❍ 추진실적 : 없음

2) 사업평가 및 개선사항

- 계획했던 내용과는 다르게 네트워크와 전교조 직업교육위원회의 연대가 쉽게 되지 않아 사업진행이 되지 않음.

5. 회원 조직사업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2. ~ 2021. 12.

❍ 사업대상 :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회원

❍ 사업내용 :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회원 조직

❍ 추진방법 :

세부사업명	세부사업내용	추진시기
신규 회원 조직	- 네트워크 굿즈 발송	2021.02.~2021.12.
기존 회원 조직	- 연2회 네트워크 사업보고 및 계획 발송	2021.02.~2021.12.

❍ 추진실적

- 감사키트 제작 및 발송
- 소식지 제작

2) 사업평가 및 개선사항

- 네트워크 창립 이후 처음으로 진행하는 회원 감사키트 사업으로 집행위원장과 사무국장이 직접 찾아가 그동안 후원해 주심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하는 과정 자체를 좋게 봐주심.
- 감사키트 안에 소식지를 제작하여 네트워크 소식을 전달함. 내용물은 미비했으나 첫 사업이니만큼 정성에 초점을 두어 진행.
- 계속적인 사업으로 진행해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임.
- 회원 조직에 있어서는 자필신청서 대신 인터넷url 링크로 쉽게 접근이 가능했으나 홍보 부족, 적극성이 떨어짐. 오프라인 만남을 통한 회원 조직을 위하여 리플렛 제작함. 활용방안 계획이 필요함.

6. 현안 사업 및 연대사업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1. ~ 2021. 12.

❍ 사업대상 : 광주지역 연대단체 및 관련 기관

❍ 사업내용 : 광주지역의 시민단체 및 관련 기관들과의 적극적인 연대 및 교류를 이어나가고 각종 네트워크 단체 등 관련기관과의 연대를 지속하고자 함.

❍ 추진실적

① 전국현장실습대책회의

- 작년 상반기의 경우 격달로 서울에서 회의를 진행하였으나 코로나19 여파로 화상회의로 전환, 분기별 1회 회의를 진행하기로 함.

- 중심을 잡아주는 단위가 안식년에 들어가게 되어 각 네트워크 상황보고 등에 대한 내용을 공유함.

② 혐오문화대응네트워크

- 차별금지법 관련하여 함께 움직였으나 네트워크와의 일정이 자주 겹치는 등 회의에 참여하는 횟수가 적어 제대로 된 참여를 하지 못함.

③ 청소년노동인권 민관실무협의회

- 분기별 회의에 참석.

④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광주연대

- 활동 없음

⑤ 광주NGO센터

- NGO센터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참석하는 수준으로 그침. 그마저도 다른 외부 일정들과 겹치며 참여 어려움.

⑥ 광주화순PC방 사건 대책위

- 대상자가 청소년은 아니라 기자회견, 연서명 등의 활동에 참여.

⑦ 전태일연극 준비위원회

- 회원들을 대상으로 전태일연극 관람을 홍보.

⑧ 여수 故홍정운 현장실습생 사망사고

- 전남지역에서 진행하는 촛불집회, 기자회견 등 참석함.
- 광주지역은 촛불집회 대신 현장실습 길거리공개수업 진행.

2) 사업평가 및 개선사항

- 코로나 시국에도 불구하고 현안 사업에 발품을 파는 등의 적극적 연대는 가능했으나 현장실습 등의 문제에 네트워크가 주체가 되어 활동해야 함에도 주도적이지 못하고 다른 지역에 기대어 활동함.
- 전교조 직교위와 함께 공동주최로 길거리공개수업을 준비했으나 실무회의에 참여하지 못하고 사람을 조직하는 등 소극적 역할에 그침.

□ 2021년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교육국 사업결과보고

1.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4. ~ 12.
○ 사업대상 : 광주지역 청소년
○ 사업내용 : 학교로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
○ 추진실적 :
① 강의 운영

구분	학급	시기
중학교	490	상.하반기
일반계고	78	상.하반기
특성화고	90	상반기
특수학교	11	상.하반기
학교 밖	14	하반기
직업계고	8	하반기
총계	691학급	

2) 사업평가 및 개선사항

- 학교에서의 요청으로 교육 일정이 변경된 경우와 코로나 자가격리로 인한 변경된 사례가 있었으나 대체적으로 학교 배정 변경이 없었습니다. 강사 선생님들의 열의와 협조적인 태도로 배정된 학교 대기실에 모이는 시간 엄수를 잘해 주셨습니다.

2. 네트워크 강사단 역량강화교육(교육기획팀)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4. ~ 12.
○ 사업대상 : 광주청소년노동인권 네트워크 노동인권교육 강사단
○ 사업내용 : 강사단 역량강화교육
○ 추진실적 :
① 역량강화 교육 진행결과

구분	내용	세부내용
5월	강사단역량강화교육 기획	- 역량강화교육 <강사단 퍼실리테이션(의견나눔)> 기획.운영 - 만족도 설문지 작성 및 취합
6월	강사단역량강화교육 기획	- 역량강화교육 <직무 스트레스 교육> 기획.운영 - 만족도 설문지 작성 및 취합
7월	강사단역량강화교육 기획	- 역량강화교육 <노동상식 Q&A> 기획.운영 - 만족도 설문지 작성 및 취합
8월	상반기 평가회의 준비	- 평가회의 의견수렴 설문지 작성 및 취합
9월	강사단역량강화교육 기획	- 역량강화교육 <노동인권교육의 사례와 방향> 기획.운영 - 만족도 설문지 작성 및 취합
10월	강사단역량강화교육 기획	- 역량강화교육 <임금계산> 기획.운영 - 만족도 설문지 작성 및 취합
11월	강사단역량강화교육 기획	- 역량강화교육 <소모임> 기획.운영 - 만족도 설문지 작성 및 취합
12월	하반기 평가회의 준비	- 평가회의 의견수렴 설문지 작성 및 취합 - 평가회의 자료 작성

2) 사업평가 및 개선사항

① 교육기획팀 운영에 관한 평가

- 교육국을 통해 강사단에게 필요한 교육을 직접 기획하고 운영한 데에 큰 의의가 있음.
- 복귀강사가 교육기획팀장을 맡다 보니 강사 간 교감이 없는 상황에서 필요한 역량강화교육을 기획하기 어려웠음. 특히 특수학교 교육 역량강화교육의 필요성을 10월에야 알게 됨. 추후 교육기획팀장 선출 시 고려해야 함.

② 역량강화 교육 운영에 관한 평가

- 2016년~2020년 역량강화교육의 내용을 참고한 결과, 다양한 분야의 역량강화교육을 진행한 것을 파악하고 2021년 역량강화교육은 노동인권교육의 방향모색과 소통을 목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다만, 코로나 19로 인해 비대면 교육을 진행하다보니 충분한 논의와 소통의 장이 되지 못해 아쉬움. 마지막 회차 소모임 운영을 통해 강사단 소통과 논의의 새로운 창구를 마련함.
- 중간에 교육기획팀이 구성되어 연간 역량강화교육 계획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

서 체계적으로 진행하기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었으나 6회의 교육이 상황에 맞도록 잘 운영되었으며, 차기 역량강화교육은 연간운영계획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함.

- 역량강화교육 운영시간을 꼭 정해진 강사모임 시간으로 고정하기보다 강사 섭외와 강의 집중도, 강사단 또는 네트워크 일정 등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조정이 가능토록 할 필요가 있음.
- 역량강화교육에서 얻고자 하는 목적과 분야가 강사별로 다양함. 구체적으로는 교육에 직접 활용 가능한 교육과 간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육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강사들의 생각이 다양하다는 것을 체감함. 이해와 합의가 필요함.
- 21년 노동법에 대한 교육이 두차례 있었으나 향후에도 노동법 및 전문 지식에 대한 교육이 꾸준이 필요할 것이라 예상됨.

3. 노동인권교육 교안 업그레이드(교안개발팀)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4. ~ 12.

❍ 사업대상 : 광주지역 청소년

❍ 사업내용 : 학교로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

❍ 추진실적 :

① 교안개발팀 회의

- 대면회의: 15회
- ZOOM 실시간 화상회의: 8회

② 교안개발 과정

- 한 명당 1개 이상의 학년을 맡아서 정리함.
- 동영상, 사진자료, 내용자료 등 각자가 잘하는 것에 대한 자료 수집하여 회의 때 최종결정함.
- 기존의 교안을 최대한 살리면서 최신의 자료로 업데이트하려고 노력함.

③ 강의 교안 학년별 주제

구분	학년	학습주제	학습제목
기초	중1	노동인권 감수성	노동아, 반갑다
	중2	노동의 역사와 종류	노동아, 넌 누구니?
	중3	노동 3권	노동아, 너의 목소리를 들려줘!
중급,	특성화고1, 인문계고3	근로계약서와 임금	내 노동의 가치
	특성화고2,	산업재해	산업재해

심화	인문계고2		
	특성화고3, 인문계고1	최저임금	최저임금 밥상차리기
	학교 밖	근로계약서 외	내 노동의 가치

④ 교안 배포
- 1차 배포: 4월 24일 중1, 중3, 고2
- 2차 배포: 5월 2일 중2, 중1과 중3 수정본
- 3차 배포: 6월 1일 중2, 중3 수정본
- 4차 배포: 9월 1일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⑤ 학교 밖 교안 개발 (인권단체협력사업)
- 목차: 노동의 개념, 근로계약서, 산업재해, 직장내괴롭힘, 성희롱, 최저임금

2) 사업평가 및 개선사항
- 교안개발팀은 팀원들이 단합이 잘되고 각자가 맡은 부분에 있어서 책임감을 가지고 속전속결로 문제를 해결해 나감.
- 누구 하나 미루는 사람 없이 솔선수범하여 각자가 잘하는 분야를 맡아서 자료 찾기 및 교안 수정 작업을 하였음.
- 단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영상 같은 경우 더 최신의 자료나 주제에 부합하는 자료를 찾아서 넣고 싶었으나 영상자료가 많지 않았음.

4. 교육국 운영

1) 회의운영

차시	일시	논의안건
1	5월 4일(화)	1. 기존 강사자격 기준의 건 2. 자격상실 후 복귀 강사 이수기준표 변경 건 3. 5월 역량강화교육 일정, 장소 건
2	6월 8일(화)	1. 학교밖청소년노동인권교육 교안 첨가에 관한 건
3	7월 15일(목)	1. 강사단 평가회의 안건수립의 건
4	8월 5일(목)	1. 센터특별회비 납부 강사 후원회비 면제에 관한 건 2. 상반기 평가회 진행에 관한 건
5	9월 1일(수)	1. 역량강화교육내용에 따라 대상의 범위 확대에 관한

		건
6	9월 28일(화)	1. 특수학교 관련 역량강화 교육 시행의 건 2. 화순pc방 사례를 교안 첨부에 관한 건 3. 10월 역량강화교육 준비사항 점검의 건
7	11월 9일(화)	1. 특성화고 현장실습 계기자료 활용의 건 2. 하반기 강사단 평가회 준비의 건 3. 조직개편 후 교육국 내부 평가의 건 4. 교육청에서 진행하는 강사 역량강화교육 참여여부의 건 5. 11월 역량강화교육 관련 논의의 건
8	12월 6일(월)	1. 조직개편 후 교육국내부 평가의 건 2. 하반기 강사단 평가회 준비의 건

2) 총괄평가

① 교육국 운영에 관한 평가

- 올해도 코로나 시국이 길어져 힘든 상황이 이어졌고 강사단 전체와 집행부 회의라든지 여타 논의들을 중간중간 해야 했는데 역량강화교육 일정이 바빠서 그런 자리가 없어서 아쉬웠습니다. 교안 개발팀 선생님들께서는 대면, 비대면 줌으로 회의 진행을 해서 교완 보안작업을 해주셨고 모두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각자의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 교육기획팀은 인원이 적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아쉬움으로 남았고 차기 교육국에서는 기획팀 인원을 추가하는 방향이 좋을 듯합니다.
- 올해 교육국이 제대로 꾸려지다 보니 전반적으로 안정화 되었다고 생각되며 정기적인 교육국 회의를 통해 일 년 행사를 진행하고자 했습니다. 다만 4월에 교육국이 꾸려지다 보니 무언가 부족한 점이 있었다는 생각에 2022년에는 교육국이 일찍 꾸려져야 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 2021년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상담국 사업결과보고

■ 2021 상담사업 계획

1. 상담인력과 함께하는 학교로 찾아가는 노동인권 상담소 운영

- 기간: 3월-12월, 총 10회
- 장소: 학교가 마련한 상담 공간
- 방식: 상담인력 1인과 상담사가 점심시간을 이용, 상담 진행
- 홍보물: 알바명함이 아닌 알바포스터로 학급에 부착
- 상담인력: 김현용, 주귀숙, 한가람

식사비: 2인×10회×8천원 = 160,000원 알바상담자에게 제공할 손명함 및 간식비: 10회×1만원 = 100,000원

2. 상담사 역량강화 연수

- 기간: 상반기와 하반기 2회
- 대상: 상담인력 및 희망자
- 내용: 바뀐 노동법, 상담사례 및 노동청 진정 건 등

강사비 200,000원 × 2회 = 400,000원

■ 2021 상담사업 평가

준비된 상담인력이 있었지만 코로나19로 계획에 따른 사업을 진행하지 못했다. 대면상담과 청소년노동인권 상담 홍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 2021년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연구소 사업결과보고

1. 연구소 카페 운영

- 목적 : 노동인권 연구 자료 수집 및 보급
- 방법 : 노동인권교과 담당 교사 및 강사단 참여(강사단과의 협의 필요)
- 수업에 도움이 되는 자료 개발 및 보급

▶ 사업 평가

- 각 단원별 수행평가 자료 개발 및 디지털 자료화 완료
- 현장실습제도에 대한 수업 자료 개발 및 전국 보급
- 토론중심 수업 자료 개발
- 월 1회 정기회의 개최를 통한 정례화 안착
- 노동인권교과 담당 교사의 수업을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 개발

2. 정부 연구 용역 사업 참여

- 목적 : 노동인권교육 정부 정책 참여
- 방법 : 교육부 및 노동부 연구 용역 사업 참여

▶ 사업 평가

- 전국시도교육감 협의회 연구용역 경기교육연구원 수탁 사업 참여
- 2022 개정교육과정 국가교육과정 총론에 '노동인권' 포함 여부 연구
- 교육부 2022 개정교육과정 국가교육과정총론에 '일과 노동의 가치' 명시 발표

3.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사대상 노동인권 직무연수

- 목적 : 노동인권교육 참여 교사 역량 강화
- 일시 : 2022년 1월 예정
- 대상 : 교사 및 시민 대상

▶ 사업 평가

- COVID로 인하여 직무연수 미실시

4. 노동인권 아카데미 운영

- 목적 : 교사 및 강사단 역량 강화(강사단 협의 필요)
- 방향 : 노동인권에 대한 인문학적 접근
- 시기 : 분기별 1회 개최

▶ 사업 평가

- COVID로 인하여 직무연수 미실시

5. 교사 연구회 운영

- 목적 : 노동인권교육 참여 교사 확산
- 방법 : 시교육청 지원 사업

▶ 사업 평가

- 연구소 사업과 병행하여 실시
- 연구소 카페 운영에 대한 공동 성과 기여
- 2022년에는 13개 특성화고등학교 노동인권교과 담당 교사로 확대 운영 계획
- 2022년 2월 25일(금) 협의회 개최

6. 노동인권교육 컨설팅단 활동

- 목적 : 노동인권교육 확산
- 방법 : 시교육청 지원사업

▶ 사업 평가

- 컨설팅단 사업의 영향과 광주광역시교육청 직업교육팀의 노력으로 광주광역시교육청 관내 13개 특성화고등학교에 노동인권교과를 정규교육과정의 선택교과로 편성 확정

□ 2021년 청소년노동인권센터 사업평가

□ 위탁개요

○ 사 업 명 : 2021년 청소년노동인권센터 민간위탁사업
○ 장　　소 : 광주광역시
○ 대　　상 : 광주광역시 청소년
○ 목　　적 : 광주광역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노동환경 개선
○ 주요내용
- 정책 사업
- 상담 및 법률지원 사업
- 교육 사업
- 홍보 및 캠페인 사업

○ 소요예산 : 308,000천원

□ 사업개요 : 5개 분야, 12개 사업

□ 예 산 액 (단위 : 천원)

합계	인력운영비	센터기본경비	사업비
308,000천원 (100%)	177,125천원 (57.5%)	30,398천원 (9.9%)	100,477천원 (32.6%)

□ 세 부 사 업 추 진 결 과

분야	사업명	사업계획		추진실적		사유
		횟수	참여인원	횟수	참여인원	
정책	생애 첫 알바노동 성공 키트	1회	250명	1회	250명	
	정책토론회	2회	20명	2회	51명 *대면 참석 33명, 비대면 유튜브 시청 18명	유튜브 시청 증가
	청소년 알바 친화사업장 선정	11회	1,688명	9회 ※만족도 조사 1회, 기선정사업장모니터링 1회, 신규조사 활동 3회, 발표회 1회, 홍보 현수막 1회, 친화사업장 지원 1회, 포스터·판플렛 배포 1회, 버스영상 광고 1회	3,193명 ※기선정사업장모니터링 64개소, 신규선정 26개소, 친화사업장 홍보 포스터·리플렛 3000명, 친화사업장 지원 76개소, 발표회 참석자 27명	코로나19로 지역행사와 간담회 취소
	초단시간 청소년 노동자 지원금	1회	50명	1회	50명	
상담 및 법률지원	알바지킴이 상담센터 운영	630회	540명	580회 *상담횟수	405명 *상담자수	청소년 알자리 감소 등의 영향
	알바지킴이 모바일 앱 운영	3회	3명	0회 *상담횟수	1명 *가입자 명수	효율성 저하로 21년 2월 폐기
	찾아가는 노동상담소	5회	25명	8회	19명	하반기 대학교 요청 증가
교육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	10회	50명	14회	139명	청소년기관, 종사자 등 교육대상 확대
	알바지킴이 양성교육	4회	8명	4회	8명	
홍보 및 캠페인	청소년노동 인권센터 홍보 및 캠페인	100회	24,700명	143회 ※SNS 운영 93회, 페이스북광고 10회, 카카오톡광고 20회, 카카오톡 메시지 발송 14회, 포스터 광고 1회, 현수막 광고 4회, 캠페인 10회, 기념품 배포 1회	62,074명 ※페이스북 광고 도달수56,196명, 카카오톡 광고 클릭수 1,616명, 메세지 발송 3,424명, 캠페인 738명, 기념품 배포 100명	SNS홍보 강화 및 포스터,현수막 광고 증가
	대학생 서포터즈 운영	18회	12명	19회 ※홍보컨텐츠제작 14회, 센터홍보활동 5회	12명 ※상반기 6명, 하반기 6명	
문화	청소년 노동 인권 문화체험	1회	100명	1회	100명	

□ 총괄평가

1) 전국 최초로 '초단시간 청소년 노동자 지원금' 사업 추진

- 주휴수당 지급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초단시간 청소년 노동자를 지원하고자,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는 10만원 상당의 광주상생카드로 지원하는 사업을 전국 최초로 실시하여 그 필요성을 사회에 알림.

2) 권리침해 사전예방 및 일회성 사업의 한계 극복 노력

- 청소년 시기에 경험하는 생애 첫 노동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한 탐색이 집중되는 수능 이후, 알바 노동에 필요한 노동상식, 알바 권리 가이드북, 아르바이트 필요 물품 등을 배포하여 피해를 사전 예방함.
- 신청할 때 카카오톡 친구추가를 유도하여 부당대우 경험 시 바로 상담과 연계토록 하여 사업의 연속성을 도모함.

3) 청소년알바친화사업장 조건 강화와 개선 필요성

- 소상공인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높이고 숨은 친화사업장 발굴을 위해 상인회, 외식업중앙회, 5개 구청 등의 적극적인 홍보를 독려함과 동시에 친화사업장의 공신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에 선정된 알바친화사업장에도 서류제출을 의무화하고 서류심사와 현지방문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함.
- 현재 친화사업장의 선정 조건으로 만 24세 이하 후기 청소년까지를 고용 범위에 두고 있으나 실제 만 18세 이하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많지 않고 또 고용을 얼마나 유지하는지에 대한 확인도 어려움. 이에 대한 보완 필요.
- 주휴수당의 경우 해당자가 없으면 주휴수당을 주지 않아도 위법하지는 않지만 조건의 보완과 강화가 필요함.

4) 코로나 19의 변화로 인한 온라인 상담 강화와 대응방안 강구

- 코로나19로 비대면 온라인 상담 홍보 및 온라인 상담 강화함, 10대와 20대에서 많이 이용하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비즈보드 광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해 알바지킴이 상담센터와 센터를 홍보하고 온라인 상담을 유도하여 2019년 18%, 2020년 25%, 2021년 27%로 온라인 상담률이 계속적으로 증가함.
- 알바지킴이 상담센터의 상담율은 2019년 781회, 2020년 631회, 2021년 580회로 감소하고 있음. 청소년 노동자 고용률 저하와 코로나 19 상황, 키오스크 대체 등 여러 요인이 있으나 플랫폼 노동 증가 등 청소년 노동자 또한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에 들지 않는 특수고용노동자가 늘고 있는 현실과도 무관하지 않음. 상담 및 사업 전 영역에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사업방식을 탈피하여 현실을 개선시켜 나가는 사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5) 청소년노동인권교육사업의 연속성 확보

- 청소년노동인권교육의 사각지대에 있는 대안교육기관, 쉼터, 회복지원시설 등을 대상으로 청소년 정서와 요구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진행함. 21년 12회 121명에서 22년 14회 139명으로 증가.
- 청소년 기관의 요구로 교육대상을 청소년에서 청소년기관 종사자까지 확대하여 인사노무교육을 진행함.
- 22년 교육전담인력에 대한 예산이 확보되어 노동인권교육사업을 연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됨.

□ 각 분야별 평가

1. 정책 분야

1) 일회성 지원사업의 한계에 머무르지 않고 알바성공키트 신청 시 피해구제 및 상담 가능한 카카오톡 친구 추가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접수 기간 중 230건 증가, 카카오톡 친구 추가 증가율 42%로 사업의 연속성을 꾀함.
그러나 키트 수령후 인증샷과 후기 25건, 만족도 조사 74건으로 참여율은 저조함. 인증샷과 후기는 센터 홍보 효과도 있으므로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2) 현장실습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토론회를 개최하여, 실태조사의 당사자인 청소년, 학부모, 교사가 참여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지역 내에서 '현장실습' 문제를 공론화하였음.
정책 제안 내용을 검토하고 실행 할 수 있는 지방고용노동청의 불참과 광주시교육청의 책임 있는 직책의 담당자가 불참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음.

3) 청소년알바친화사업장 선정에 있어 기존에 소상공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발굴하던 방식에서 직접 신청 방식으로 변경하여 사업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함.

4) 전국 최초로 초단시간 노동자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초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실태와 지원 필요성에 대해 알림. 사업만족도 조사 결과, 식비와 물건 구입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었다는 답변이 90%로 높게 나타남.

2. 상담 및 법률지원 분야

1) 지역 내 알바지킴이 상담센터의 인지도 상승으로, 지인 소개와 기존 상담자의 재상담으로 인한 상담 비율이 매년 상승하고 있으며, 2019년 37.8% → 2020년 47.1% → 2021년 52.7%로 청소년 노동자들에게 광주지역의 대표적인 상

담 창구로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음

2)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고, 상반기에 온라인상담소를 운영하여 청소년들의 접근성을 높히고 손쉽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게 함.

3) 알바지킴이 모바일 앱 지원이 1월 말 종료됨에 따라,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활성화하고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 채널을 통해 매주 최신 노동 현안 정보를 제공하는 등 공백을 최소화 함.

3. 교육 분야

1) 2년에 걸쳐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사업이 안정화됨. 특히 교육청에서 진행하는 학교로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에 참여 하지 못한 청소년, 또는 한번 더 교육을 받고 싶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인권교육을 진행하여 노동인권교육의 기회의 폭을 넓힘.

2) 알바지킴이 양성과정을 통해 노동법을 익힌 청소년 당사자들을 확보함으로써 이후 자신의 노동인권을 지킬 수 있는 청소년 당사자를 배출함은 물론, 청소년 노동인권 활동가로서 청소년알바친화사업장 모니터링과 선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함.

3) 22년 교육전담인력이 확충되어, 강사단 역량강화교육, 교육 커리큘럼 및 콘텐츠 개발 등의 교육사업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4. 홍보 분야

1) 청소년 특성에 맞는 SNS 홍보를 강화 함. 이주의 센터 활동, 이주의 노동상식, 주간 뉴스, 카드뉴스 등을 제작하여 센터활동과 노동인권에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정기적으로 꾸준히 홍보를 진행 함.

2) 코로나19로 인한 대면 홍보·캠페인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년 1회 운영하던 대학생 홍보 서포터즈를 상·하반기 2회 운영하여 당사자에게 맞는 홍보 활동을 기획하고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노동 관련 컨텐츠를 제공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침.

5. 문화 분야

1) 청소년과 청소년 단체 등 청소년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쉽게 접근 가능한 문화사업을 신설함으로써 센터와 유대감을 형성함.

2) 청소년이었던 전태일의 일대기를 그린 연극 관람을 통해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연대의 필요성에 대해 알리고 인식변화의 계기를 마련함.

□ 2021년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회계 보고

관	항	목	내 용	2021 예산	결산	집행
수입		이월금액		23,644,516	23,644,516	
	회비수입	단체별회비	전교조광주지부(100,000원*12개월)	1,200,000	1,200,000	100%
			YMCA(30,000원*12개월)	360,000		0%
			민주노총광주법률원(30,000원*12개월)	360,000	360,000	100%
			광주비정규직센터(30,000원*12개월)	360,000	360,000	100%
			참교육학부모회(30,000원*12개월)	360,000	360,000	100%
			교육희망네트워크(30,000원*12개월)	360,000	360,000	100%
			광주여성노동자회(30,000원*12개월)	360,000	360,000	100%
			전국여성노동조합 (30,000원*12개월)	360,000	360,000	100%
			광주청년유니온(10,000원*12개월)	120,000	120,000	100%
		후원회비	후원회원 85명 (970,000원*2개월) 100명(1,120,000원*10개월)	13,140,000	11,700,000	89%
		센터특별회비	170,000원*5개월 200,000원*7개월	2,250,000	2,250,000	100%
		강사비 후원	강사료*20%	13,000,000	14,882,516	114%
	회비수입 누계			32,230,000	32,312,516	100%
	기타수입	일자리안정자금	70,000원*12개월	840,000	420,000	50%
		일시후원	일시후원		290,000	
		기타	기타(이자수입)		1,223	
		후원사업	후원 티켓 (추후 입금)	340,000	350,000	103%
	기타수입 누계			1,180,000	1,061,223	90%
	수 입 총 계			57,054,516	57,018,255	100%
					-	

관	항	목	내 용	2021 예산	결산	
		교육사업비	교육국장 업무추진비	500,000	500,500	100%
			교육부국장 업무추진비	200,000	200,500	100%
			교육국 회의비 (50,000원*10회)	500,000	325,600	65%
			교육안개발팀 업무추진비	500,000	500,000	100%
			교육기획팀 업무추진	200,000	200,000	100%
			강사단 역량강화교육 (10회*5만원, 강사비 20만원*6회)	1,700,000	1,177,900	69%
			강사단 평가회 및 회의비 (100,000원*4회)	400,000	201,690	50%
			줌 공부모임		32,500	
			집행부 강사단 간담회 (100,000원*2회)	200,000		0%

		교육사업비 누계		3,700,000	3,138,690	85%
		상담사업비	상담 후 식사비 8,000원*2인*10회	160,000		0%
			캠페인 명함 및 간식비	100,000		0%
			상담사 역량강화 연수 200,000원*2회	400,000		0%
		상담사업비 누계		660,000	0	0%
		연구사업비	연구소 운영비 (50,000*4회)	200,000		0%
		연구사업비 누계		200,000	0	0%
		대외사업비	전국네트워크 분담금	200,000		0%
			광주 NGO 센터 회비 (연1회)	50,000	100,000	200%
			인권단체협력사업 자부담 (연1회)	80,000		0%
			혐오대응네트워크 분담금 (20,000*12개월)	240,000	240,500	100%
			기타 현안 연대 사업비	300,000	251,500	84%
		대외사업비 누계		870,000	592,000	68%
		일반사업비	기자회견 및 집회진행(50,000원*3회)	150,000		0%
			후원사업비 (리플렛 제작비)	450,000	450,000	100%
			현장실습 토론회(검토단,토론자)		185,300	
			후원사업비 (알바친화사업장 후원티켓 비용 입금)	7,104,500	7,195,000	101%
		일반사업비 누계		7,704,500	7,830,300	102%
	사업비 누계			13,134,500	11,560,990	88%
	홍보비	홍보사업비	광주드림	100,000		0%
			홍보물품비 (리플렛 등)	150,000	388,000	259%
	홍보비 누계			250,000	388,000	155%
	회의비	운영위회의비	운영회의 운영	150,000		0%
		집행부회의비	집행회의 운영	50,000	182,260	365%
		정기총회의비	정기총회 (제본 및 다과, 식사)	200,000	187,900	94%
	회의비 누계			400,000	370,160	93%
	운영비	사무국 운영비	사무실 운영비 (50,000원*12월)	600,000	502,000	84%
			전화요금		125,635	
		출장비	전국네트워크, 현장실습대책위 출장비 (10만원*5회)	500,000	555,386	111%
		사무용품 구입비	PC 1대 500,000, 일터 정기구독 40,000원, 기타 사무용품 구입비 60,000원	600,000	608,900	101%
		홈페이지 등록	년 1회 등록비	141,300	141,300	100%
		지급수수료	CMS 수수료 등	1,000,000	904,836	90%
		보증보험료	센터사업비보증보험	283,000	275,300	97%

			수수료 공인인증서		4,400	
			CMS 보증보험	15,000	15,000	100%
	운영비 누계			3,139,300	3,132,757	100%
	인건비	전임자급여	시급 9,500원*209시간*12개월+식비 100,000*9개월) - 4대 보험	23,826,000	23,990,760	101%
			세금		13,200	
		퇴직연금	시급 9,500*209시간*12개월	1,985,500	470,250	24%
			퇴직연금 수수료		13,898	
		4대 보험	국민연금보험	53,610	455,840	850%
			고용보험	12,540	98,050	782%
			산재보험	45,240	91,320	202%
			건강보험	205,890	862,180	419%
	인건비 누계			26,128,780	25,995,498	99%
	예비비	차입금 상환	차입금 상환	5,000,000	5,000,500	100%
		오지급환급	강사비후원오지급환급		698,516	
		예비비	예비비	8,101,936	173,640	2%
	예비비			13,101,936	5,872,656	45%
	지 출 총 계			56,154,516	**47,320,061**	84%

12월 31일 잔액 : 9,698,194원

※ 제 2호 안건 : 정관 개정의 건

1. 상정이유

○ 정관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근거

제9조의 3(의결사항) 정기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임원의 인준 및 감사의 선출과 해임 **2. 단체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사업계획의 승인 5. 기타 중요사항

3. 의결주문

○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의 정관 개정안을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정관 개정안

정관	개정안
제 2 장 조 직 제5조(조직 구성) 회원은 청소년노동인권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는 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제 2 장 조 직 제5조(조직 구성) 회원은 청소년노동인권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는 단체나 개인을 대상으로 한다.
제9조(회기) ① 정기총회 : 매년 1회 소집 ② 확대집행위원회 : 매월 1회 소집을 원칙으로 하나, 특별한 안건이 없는 경우 익월에 실시한다.	제9조(회기) ① 정기총회 : 매년 1회 소집 ② 확대집행위원회 : 격월 소집을 원칙으로 하나, 특별한 안건이 있는 경우 확대집행위원이 소집하여 실시한다.
제10조의 1(의결정족수) ② 총회 의결권은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명으로 위임할 수 있다. 단, 위임참석은 참석회원 과반을 넘을 수 없다. 위임장은 총회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의 1(의결정족수) ② 총회 의결권은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명,문자, 전화로 위임할 수 있다. 단, 위임참석은 참석회원 과반을 넘을 수 없다. 위임장은 총회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확대집행위원회 구성 및 소집) ① 확대집행위원회는 가입단체의 대표 6인와 개인회원 6인, 집행위원 6인으로 구성하며, 총회에서 선임한다. 확대집행위원회는 집행위원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제11조(확대집행위원회 구성 및 소집) ① 확대집행위원회는 가입단체의 대표, 개인회원, 집행위원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총회에서 선임한다. 확대집행위원회는 집행위원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제15조(집행위원의 선임 방법) ① 집행위원장은 정기총회에서 본 회 가입단체 회원 중 본 회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인 중에 선출한다	제15조(집행위원의 선임 방법) ① 집행위원장은 정기총회에서 본 회 가입단체 회원, 개인회원 중 본 회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인 중에 선출한다

제24조(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운영위원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4조(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확대집행위원**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항목	제 6조(조직의 가입 및 탈퇴) ③ 개인은 자유로이 본 회를 가입, 탈퇴할 수 있다.
	제 11조의 4(확대집행위원의 임기) : 확대집행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 12조의 2(감사의 임기) : 감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제 3호 안건 : 2022년도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임원 선출의 건

1. 상정이유

- ❍ 정관 제 11조에 따라 확대집행위원회를 선임하고자 함.
- ❍ 정관 제 12조에 따라 2022년도 신규감사 2인을 선출하고자 함.
- ❍ 정관 제 16조에 따라 집행위원을 선임하고자 함.

2. 주요근거

제11조(확대집행위원회 구성 및 소집) ① 확대집행위원회는 가입단체의 대표 6인와 개인회원 6인, 집행위원 6인으로 구성하며, 총회에서 선임한다. 확대집행위원회는 집행위원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제12조(감사) 본 회를 위하여 감사 2인을 둔다. 감사는 확대집행위원회 추천을 통해 총회에서 선출하며 본 회 각 단위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제16조(집행위원의 임기) 집행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3. 의결주문

- ❍ 2022년도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의 확대집행위원회와 감사 선출, 집행위원의 선임에 대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 4호 안건 : 2022년도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사업계획의 건

1. 상정이유

○ 2022년도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의 사업계획을 승인받고자 함.

2. 주요근거

제10조의 2(의결사항) 정기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집행위원장의 임면 및 감사의 선출과 해임 2. 단체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사업계획의 승인** 5. 기타 중요사항

3. 의결주문

○ 2022년도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의 사업계획을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2년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세부사업별 사업계획

	사 업 명	기 간	내 용
상담국	찾아가는 노동인권 상담소	3~12월	- 월별 1회, 총 10회 활동
	상담사 역량 강화 교육	3~12월	- 2회
교육국	학교로 찾아가는 노동인권 교육	4~12월	- 학교로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
	강사단 역량강화 교육	3~12월	- 교육기획팀이 계획
	노동인권교육 교안 업그레이드	2~12월	- 초등교안 개발(교육청 협업) - 장애인학교 교안 개발 - 중고등 교안 보완 작업
사무국	청소년 노동인권 캠페인	3~12월	- 분기별 1회 - 현장실습 바로알기 - 네트워크 단체 알리기
	학교 밖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3~12월	- 인권단체협력사업 공모를 통해 진행 - 직업학교 노동인권교육 진행
	도제 및 현장실습 대응	1~12월	- 교육청 모니터링 - 실태조사 이행사항 점검
	특성화고 실험실습실 유해환경 개선	3~12월	- 공부팀 구성하여 자료 조사 - 유해환경의 심각성 및 개선 필요성 여론 형성
	직업학교 실태조사	3~12월	- 직업학교 교육을 받는 청소년 대상 실태조사 진행
	회원 조직사업	2~12월	-상반기(8월), 하반기(12월) 소식지발행 - 12월에 감사키트(년1회)
	연대사업 및 현안대응사업	1~12월	- 광주 NGO 센터 - 혐오대응네트워크 - 전국현장실습대책위 - 기타 현안에 대응
연구소	노동인권교과서 집필 및 발간	1~12월	- 개정교육과정에 맞춘 노동인권 교과서 개정판 집필 및 발간
	노동인권교과 연구회 운영	1~12월	- 노동인권교과 연구모임 구성
	노동인권 직무연수	1~12월	- 노동인권 담당교사 역량 강화
	컨설팅단 활동	1~12월	- 정규교육과정 편성 예정 학교 컨설팅

□ 2022년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사무국 사업계획

1. 청소년 노동인권 캠페인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3. ~ 12.
○ 사업대상 : 광주지역 청소년
○ 사업내용 : 광주지역 청소년 대상 캠페인 운영

2) 추진방법

분기별 1회 총 4회(거리두기 규제완화시)
- 유스퀘어, 충장로, 청소년 거점장소, 축제 부스 등 방문
캠페인 내용 : 현장실습 바로알기,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알리기,

3) 예산

비목	하위비목	산출근거	예산
사업비	일반사업비	프랑 30,000 * 1회	30,000
		간식비 5,000 * 5명 * 4회	100,000
		문구, 홍보물품은 기존 제품 활용(밴드)	20,000
			150,000

2. 학교 밖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4. ~ 12.
○ 사업대상 : 광주지역 학교 밖 청소년 관련기관 소속 청소년
○ 사업내용 : 광주지역 학교 밖 청소년 기관으로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 실시
○ 추진배경 : 매년 광주시와 진행하고 있는 인권단체협력사업의 일환으로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찾아가는 노동인권 교육을 실시하고자 함.

2) 추진방법

- 대상을 학교밖 경계에 있는 기관까지 넓혀 진행. 직업계고(직업학교)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 확대, 발굴.
- 인권단체협력사업 공모를 통해 진행

□ 지방보조사업 세부추진일정

세부사업명	세 부 사 업 내 용	추진시기
관련기관 간담회	. 2022년 사업계획 논의 및 사업 후 평가 . 학교 밖 청소년 지원기관 및 교육기관, 쉼터, 직업학교 등 관련 기관의 교육 요구 파악	2022.3.1.~ 2022.12.31.
간사 활동	. 관련 기관 교육 일정 조정 . 교육 컨텐츠 자료 수집을 비롯한 실무 집행	2022.3.1.~ 2022.12.31.
교육 컨텐츠 개발	. 기존 노동인권 교육 컨텐츠 자료 조사 . 2022년 개정된 노동관련 법안 조사 . 교육계획서 및 교육 PPT 제작 . 전문강사단 회의를 통한 수정 및 보완작업	2022.3.1.~ 2022.12.31.
노동인권 교육	. 노동인권 감수성 교육 . 근로계약서 작성해보기(실습) . 2022년 바뀐 노동법 포함한 실전 노동법 교육	2022.5.1.~ 2022.12.31.
노동인권 캠페인	. 노동인권교육과 연관된 노동인권 의식 함양 캠페인 및 홍보 용품 배포 . SNS를 이용한 온라인 캠페인	2022.5.1.~ 2022.12.31.

□ 예산집행계획

사업내용	예산비목	금 액 (단위:천원)	산 출 기 초	경 비 사용방법
총 계		8,080	-100%	
보 조 금 (소계)		8,000	-99%	
자문위원회	인건비	560 (7%)	○ 70,000원*4인*2회	무통장입금
	사업진행비	80 (1%)	○ 8,000원*5명*2회	유리알카드
교육컨텐츠 개발	사업진행비	800 (10%)	○ 8,000원*5명*20회	유리알카드
노동인권 교육	인건비	5,000 (62%)	○ 200,000원*25회	무통장입금
노동인권 캠페인	사업진행비	1,560 (19%)	○ 홍보용품 4,000원*390명	유리알카드
자 부 담 (소계)		80	-1%	
노동인권 캠페인	업무진행비	80 (1%)	○ 문구 80,000원	유리알카드

3. 직업학교 실태조사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4. ~ 12.

○ 사업대상 : 직업교육을 받는 청소년

○ 사업내용 : 직업교육을 받는 청소년들의 진로, 학교의 관리 등 실태조사

○ 추진배경 : 직업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청소년들의 실태를 조사할 필요성을 느낌.

2) 추진방법

사업명	세부사업명	추진기간	추진방법
직업학교 실태조사	실태조사	상.하반기	- 노동인권교육(학교 밖) 말미에 QR 설문 - 교육청에서 관련기관 등 자료를 수집해 전화
	토론회, 기자회견 등	하반기	- 학생의 진로, 학교의 관리 등 실태조사를 토대로 토론회, 기자회견 등 진행

3) 예산

비목	하위비목	산출근거	예산
사업비	일반사업비	프랑 30,000 * 2회	60,000
		자료집 인쇄	100,000
		토론자 수당	300,000
		다과(물 등)	40,000
			500,000

4. 현장실습 및 도제학교 대응 사업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3. ~ 12

○ 사업내용 : 현장실습 및 도제학교 관련 대응 사업

○ 추진방법

2) 추진방법

사업명	세부사업명	추진기간	추진방법
현장실습 및 도제학교 대응사업	모니터링	상반기	- 교육청 모니터링, 실태조사 이행사항 점검
	토론회, 기자회견 등	하반기	- 여론을 통해 현장실습 및 도제의 문제점 알리기

–

3) 예산

비목	하위비목	산출근거	예산
사업비	일반사업비	협의비	200,000
			200,000

5. 특성화고 실험실습실 유해환경 개선사업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 ~ 12.

❍ 사업내용 : 특성화고 실업실습실 유해환경 개선사업

2) 추진방법

사업명	세부사업명	추진기간	추진방법
특성화고 실험실습실 유해환경 개선사업	실태조사	상.하반기	- TF팀 꾸려 자료수집 및 조사, 공부하기
	토론회, 기자회견 등	하반기	- 유해환경의 심각성 및 개선 필요성 여론 형성

–

3) 예산

비목	하위비목	산출근거	예산
사업비	일반사업비	회의비	200,000
			200,000

6. 회원 조직사업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2. ~ 2022. 12.

❍ 사업대상 :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회원

❍ 사업내용 :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회원 조직

2) 추진방법

세부사업명	세부사업내용	추진시기
신규 회원 조직	- 1인 1회원 모집하기	2022.02.~2022.12.

기존 회원	- 소식지와 감사키트 전달(우편,방문)	2022.02.~2022.12.

- 상반기(8월), 하반기(12월) 소식지 발행
- 감사키트(12월)

3) 예산

비목	하위비목	산출근거	예산
사업비	일반사업비	감사키트 구성품 (7,000*100명*1회)	700,000
		우편요금	50,000
		포장 등 필요한 문구	50,000
			800,000

7. 현안 사업 및 연대사업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1. ~ 2022. 12.

○ 사업대상 : 광주지역 연대단체 및 관련 기관

○ 사업내용 : 광주지역의 시민단체 및 관련 기관들과의 적극적인 연대 및 교류를 이어나가고 각종 네트워크 단체 등 관련기관과의 연대를 지속하고자 함.

2) 예산

비목	하위비목	산출근거	예산
사업비	대외사업비	전국네트워크 분담금	200,000
		광주 NGO 센터 회비(연 1회)	0
		인권단체협력사업 자부담(연 1회)	80,000
		혐오대응네트워크 분담금(20,000*12개월)	240,000
		기타 현안 연대사업비	300,000
			820,000

8. 홍보

- 홈페이지에 상시자료 업로드
- SNS를 통한 주기적인 네트워크 활동 알려내기

□ 2022년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교육국 사업계획

1.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4. ~ 12.
○ 사업대상 : 광주지역 청소년
○ 사업내용 : 학교로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

2. 네트워크 강사단 역량강화교육(교육기획팀)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2. ~ 12.
○ 사업대상 : 광주청소년노동인권 네트워크 노동인권교육 강사단
○ 사업내용 : 강사단 역량강화교육

① 역량강화 교육 계획(안)

구분	내용	세부내용
3월	장애인 학교교안	- 장애당사자의 특성에 따른(청각,시각) 교안을 만들어 역량강화교육에서 시연.
5월	노동법과 임금	- 새로 바뀐 노동법 설명
6월	현장실습	- 현장실습계기자료 공부
9월	현장실습	- 현장실습계기자료 공부
10월	추후 선정	- 추후 주제 선정
11월	소모임 운영	- 소모임을 이루어 의견나누기

※ 복귀 강사 재교육
- 상반기·하반기 2회 나눠서 진행 예정

3. 노동인권교육 교안 업그레이드(교안개발팀)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1. ~ 12.

○ 사업내용 : 교안 업그레이드 및 개발

1. 초등교안 만들기
-교안 개발팀과 교육국 전체가 참여하여 교육청과 협업 예정

2. 중·고등 교안 보완

3. 장애인 학교 교안 만들기
- 장애 당사자의 특성에 따른 교안을 (청각 또는 시각등) 2~3월중 기본 교안을 만들 예정.

■ 교육국 예산

비목	하위비목	산출근거	예산
사업비	교육사업비	교육국장 업무추진비	500,000
		교육부국장 업무추진비	200,000
		교육국 회의비(50,000*12개월)	600,000
		교안개발팀 업무추진비(100,000*5명)	500,000
		교육기획팀 업무추진비(100,000*4명)	400,000
		강사단 역량강화 교육(센터 지원)	0
		강사단 평가회 및 회의비(100,000*6회)	600,000
			2,800,000

□ 2022년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상담국 사업계획

1. 목적

- 청소년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신장한다
- 코로나19로 인해 진행하지 못한 노동인권 홍보 및 상담사업을 진행한다

2. 방법

- 학내 거점마련이 가능한 곳은 노동인권동아리 담당 교사와 함께 진행(3개교)
- 학내 진행이 어려운 경우 하교 시간에 맞춰 노동인권 명함 배포 및 피켓 홍보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연계한 노동인권 홍보 및 상담 진행
 (학교 밖 수업에 상담이 가능한 상담 인력 우선 배치)
- 노동인권침해에 대한 상담 인력, 상담 활동 진행

3. 진행

2022. 3. - 2022. 12. 월 1회, 총 10회 진행

4. 예산

노동인권 명함과 피켓은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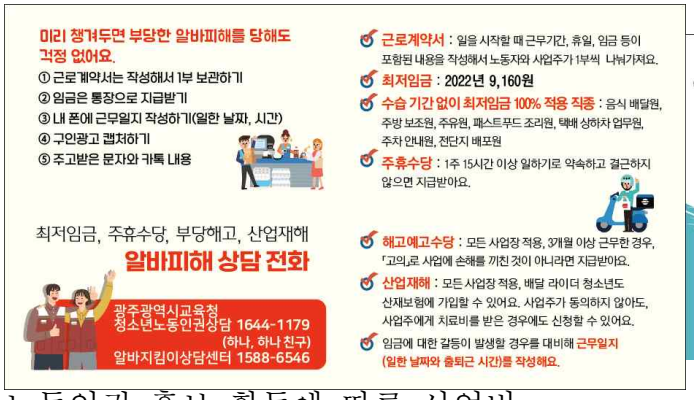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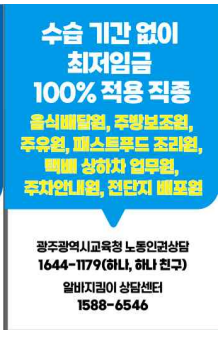

노동인권 홍보 활동에 따른 사업비

① 상담·홍보활동비
 : 상담, 홍보활동

② 상담사 역량 강화
: 상·하반기 2회, 렌즈를 통해 본 노동인권

비목	하위비목	산출근거	예산
사업비	상담사업비	상담홍보활동비(8,000*10회*4인)	320,000
		상담사 역량강화교육(150,000*2회)	300,000
			620,000

□ 2022년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연구소 사업계획

1. 2022 개정교육과정에 맞춘 노동인권교과서 개정판 집필 및 발간

- 배경 : 현재 사용중인 교과서가 2015 교육과정인 관계로 사용 연한이 2024년에 끝나는 관계로 새로운 2022 개정교육과정 교육부 고시에 맞춘 개정 교과서 집필이 필요
- 방법 : 현재 노동인권교과를 가르치고 계시는 현직 교사 중 집필진을 꾸려 집필
- 2022년 광주광역시교육청 본예산 편성 완료

2. 노동인권 교과 연구회 운영

- 목적 : 노동인권 교과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한 연구모임 구성
- 방법 : 광주광역시 관내 13개 특성화고등학교 노동인권교과 담당교사 중심으로 운영
- 노동인권교육연구소 카페를 통한 자료 개발 및 탑재

3.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사대상 노동인권 직무연수

- 목적 : 노동인권 교과 담당 교사 역량 강화
- 일시 : 2022년 8월 예정
- 대상 : 노동인권 교과 담당교사
- 2022년 광주광역시교육청 본예산 편성 완료

4. 노동인권교육 컨설팅단 활동

- 목적 : 노동인권교육 확산
- 방법 : 각급 학교에서 노동인권교과를 정규교육과정으로 편성하려는 학교에 대한 교육과정 컨설팅
- 광주광역시교육청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하지만 광주광역시 외 학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온라인 컨설팅 실시
- 비예산 사업

□ 2022년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예산안

○ 수입 예산

항	목	내 용	2022년 예산
	이월금액		**9,698,194**
회비수입	단체별회비	전교조광주지부(100,000원*12개월)	1,200,000
		YMCA(30,000원*12개월)	-
		민주노총광주법률원(30,000원*12개월)	360,000
		광주비정규직센터(30,000원*12개월)	360,000
		참교육학부모회(30,000원*12개월)	360,000
		교육희망네트워크(30,000원*12개월)	360,000
		광주여성노동자회(30,000원*12개월)	360,000
		전국여성노동조합 (30,000원*12개월)	360,000
		광주청년유니온(10,000원*12개월)	120,000
	후원회비	후원회원 90명 (1,000,000원*12개월)	12,000,000
	센터특별회비	180,000원*12개월	2,160,000
	강사비 후원	강사료*20%	15,000,000
회비수입 누계			**32,640,000**
기타 수입	일자리안정자금	30,000원*12개월	360,000
	일시후원	일시후원	200,000
	기타	기타(이자수입)	1,500
기타수입 누계			**561,500**
수 입 총 계			**42,899,694**

❍ 지출 예산

항	목	내 용	2022년 예산
	교육사업비	교육국장 업무추진비	500,000
		교육부국장 업무추진비	200,000
		교육국 회의비 (50,000원*12회)	600,000
		교육안개발팀 업무추진비 (500,000원)	500,000
		교육기획팀 업무추진 (400,000원)	400,000
		강사단 평가회 및 회의비 (100,000원*6회)	600,000
	교육사업비 누계		**2,800,000**
	상담사업비	상담 후 식사비 8,000원*4인*10회	320,000
		상담사 역량강화 연수 150,000원*2회	300,000
	상담사업비 누계		**620,000**
	연구사업비	연구소 운영비 (50,000*4회)	200,000
	연구사업비 누계		**200,000**
	대외사업비	전국네트워크 분담금	-
		광주 NGO 센터 회비 (연1회)	납부함
		인권단체협력사업 자부담 (연1회)	80,000
		혐오대응네트워크 분담금 (20,000*12개월)	240,000
		기타 현안 연대 사업비	300,000
	대외사업비 누계		**620,000**
	일반사업비	기자회견 및 집회진행(50,000원*3회)	150,000
		현장실습 및 도제학교	200,000
		직업학교 실태조사	500,000
		특성화고 유해환경 개선사업	200,000
		감사키트 제작	800,000
	일반사업비 누계		**1,850,000**
사업비 누계			**6,090,000**
홍보비	홍보사업비	캠페인 등	150,000
홍보비 누계			**150,000**
회의비	운영위회의비	확대집행위원회의 운영(50,000*6회)	300,000
	집행부회의비	집행회의 운영(20,000*12회)	240,000
	정기총회의비	정기총회 (제본 및 다과, 식사)	200,000
회의비 누계			**740,000**
운영비	사무국 운영비	사무실 운영비 (50,000원*12월)	600,000
		전화요금	150,000
	출장비	전국네트워크, 현장실습대책위 출장비 (10만원*5회)	500,000

	사무용품구입비	일터 정기구독 40,000원, 기타 사무용품 구입비 60,000원	100,000
	홈페이지 등록	년 1회 등록비	141,300
	지급수수료	CMS 수수료 등	1,000,000
	보증보험료	센터사업비보증보험	300,000
		인증서 수수료	4,400
		CMS 보증보험	15,000
운영비 누계			**2,810,700**
인건비	전임자급여	(시급 9,500원*209시간*12개월 +식사비100,000*12개월)-(4대보험183,000*12개월)-(소득세20760*12개월)	22,580,880
	퇴직금	시급 9,500*209시간+100,000	2,085,500
	4대 보험	국민연금	1,072,170
		고용보험	250,120
		산재보험	180,960
		건강보험	943,800
인건비 누계			**27,113,430**
	예비비	예비비	5,995,564
예비비			**5,995,564**
지 출 총 계			**42,899,694**

※ 제 5호 안건 : 2022년도 광주광역시청소년노동인권센터 사업계획의 건

1. 상정이유

○ 2022년도 광주광역시청소년노동인권센터의 사업계획을 승인받고자 함.

2. 주요근거

제9조의 3(의결사항) 정기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임원의 인준 및 감사의 선출과 해임 2. 단체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사업계획의 승인 5. 기타 중요사항

3. 의결주문

○ 2022년도 광주광역시청소년노동인권센터의 사업계획을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2년 청소년노동인권센터 운영계획

□ 위탁개요

○ 사 업 명 : 2022년 청소년노동인권센터 민간위탁사업
○ 장　　소 : 광주광역시
○ 대　　상 : 광주광역시 청소년
○ 목　　적 : 광주광역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노동환경 개선
○ 주요내용
- 정책 사업
- 상담 및 법률지원 사업
- 교육 사업
- 홍보 및 캠페인 사업

○ 소요예산 : 350,000천원

□ 사업개요 : 4개 분야, 15개 사업

□ 예 산 액

(단위 : 천원)

합계	인력운영비	센터기본경비	사업비
350,000천원 (100%)	184,501천원 (53%)	64,211천원 (18%)	101,288천원 (29%)

세 부 사 업 계 획

분야	세부사업명	시기 (월)	참여횟수		소요 예산 (천원)	비고
			인원 수	횟수		
정책	청소년 배달라이더 노동인권 실태조사	3~9월	110명	1회	4,350	신설
	정책토론회	9월	25명	1회	1,625	지속
	청소년 알바 친화사업장 선정	2~12월	2,200명	7회	66,307	확대
	초단시간 청소년노동자 지원금	6~9월	60명	1회	6,938	확대
상담 및 법률 지원	알바지킴이상담센터 운영	1~12월	480명	600회	600	지속
	영세 사업주 대상 인사.노무 컨설팅(마을노무사)	3~12월	20명	40회	3,000	신설
교육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	1~12월	50명	10회	2,016	지속
	청소년노동인권교육 프로그램 연구 및 콘텐츠 제작	1월~12월	8명	6회	2,060	신설
	청소년노동인권교육 강사단 역량강화 교육	2월~12월	20명	6회	2,820	신설
	청소년시설기관 인사.노무교육	2월~12월	20명	2회	0	신설
	청소년노동인권 동아리 운영	7월~9월	5명	8회	761	신설
홍보 및 캠페인	청소년노동인권센터 홍보	1월~12월	113,000	80회	4,815	지속
	청소년노동인권 캠페인	2월~12월	2,000	10회	2,500	신설
	청소년노동인권센터 홍보 서포터즈 운영	2월~12월	6명	26회	2,496	지속
	청소년노동인권센터 사업 결과 발표회	11월~12월	30명	1회	1,000	신설
4개	15개	1~12월	118,034	799	101,288	지속:5 신설:8 확대:2

□ 세부사업 추진계획

정책

1. 청소년 배달라이더 노동인권 실태조사

□ 사업목적
- ❍ 광주지역 청소년 배달노동자의 노동조건 및 노동환경 실태 파악
- ❍ 광주지역 청소년 배달노동자의 노동인권 개선 계획 수립 토대

□ 사업개요
- ❍ 기　　간 : 3월~9월
- ❍ 장　　소 : 광주광역시
- ❍ 대　　상 : 광주지역 청소년
- ❍ 내　　용 :
  - 1) 청소년 배달라이더의 노동조건 및 노동환경에 대한 질문
  - 2) 청소년 배달라이더의 안전 및 산재에 대한 질문

□ 추진방법
- ❍ 방　법 : 실태조사
- ❍ 횟　수 : 1회
- ❍ 인　원 : 110명
- ❍ 협력기관: 광주시교육청, 광주광역시비정규직지원센터, 전교조광주지부직업위원회,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대안교육기관협의회, 청년유니온, 청소년유니온 등

2. 정책 토론회

□ 사업목적
- ❍ 청소년 배달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 확대
- ❍ 청소년 배달노동자 노동정책에 대한 여론 수렴 및 정책 개발

□ 사업개요
- ❍ 기　　간 : 9월
- ❍ 장　　소 : 광주광역시
- ❍ 대　　상 : 광주지역 청소년 노동 관련 단체, 전문가, 청소년
- ❍ 내　　용 : 토론회

□ 추진방법
- ❍ 방　법 : 실태조사, 점검활동 결과를 기반으로 청소년 배달라이더의 노동인권 실태 현황 공유 및 정책 논의
- ❍ 횟　수 : 1회

○ 인　　원 : 25명
○ 협력기관: 청년유니온, 청소년유니온, 아동청소년의회, 전교조광주지부직업위원회,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대안교육기관협의회, 정당, 시의회 등

3. 청소년 알바친화사업장 선정 활동

□ 사업목적
○ 알바친화사업장에 대한 대중적 관심과 인식 확보를 통해 노동 환경 개선
○ 2022년도 알바친화사업장에 대한 수요 확보를 바탕으로 인증 업소 확대

□ 사업개요
○ 기　　간 : 2월~11월
○ 대　　상 : 광주지역 청(소)년 노동자 및 고용 사업장, 광주시민

□ 추진방법
○ 횟　　수 : 7회 (모집·조사·선정 3회, 홍보 및 지원 4회)
○ 인　　원 : 2,200명 (모집·조사·선정 100명, 홍보 및 지원 2,100명)

- 청소년 알바친화사업장 선정활동 세부 사업별 계획 -

3-1. 청소년알바친화사업장 모집·조사·선정

□ 사업목적
○ 기선정·유지 중인 청소년알바친화사업장에 대한 지속성 확보
○ 광주지역 청소년 고용 사업장 중 노동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친화사업장 선정

□ 사업개요
○ 기　　간 : 5월 ~ 8월
○ 대　　상 : 1) 기선정·유지 중인 청소년 알바친화사업장(76곳)
2) 신규 신청 사업장 (30곳)

□ 추진방법
○ 횟　　수 : 3회 (서류심사 1회, 현지조사 1회, 선정심의위원회 1회)
○ 인　　원 : 100곳 (현지조사 사업장 개수 기준)
※21년 기선정 사업장 76곳 중 희망 유지업소 70곳 예상 + 신규 신청 사업장 30곳

○ 방　　법 :

	21년 선정 기존 사업장 (76곳)	22년 신청 신규 사업장
5월	재신청 서류 접수 안내	유관기관 접촉 SNS 홍보 현수막 홍보
6월	신청서 접수 1. 신청서 (재신청) 2. 주휴수당 확인서 3. 청소년 근로계약서 사본 4. 사업자 명의 통장 5. 개인정보 동의서	신청서 접수 1. 신청서 (신규) 2. 사업장 소개서 3. 주휴수당 확인서 4. 청소년 근로계약서 사본 5. 사업자 등록증 6. 사업자 명의 통장 7. 개인정보 동의서
	서류심사 및 보완 요청	
7월	현지조사 (조사요원 4인, 1곳 당 10,000원)	
8월	선정 위원회 → 선정 결과 발표 → 사업주 선정 안내 ※ 선정 심의위원회 별도 운영 : 5인 (시청1, 센터장1, 자문위원2, 청소년자문위원1)	

3-2. 청소년알바친화사업장 홍보 및 지원

□ 사업목적

○ 광주지역에 청소년 알바친화사업장에 대한 홍보

○ 2021년 선정된 알바친화사업장에 대한 홍보 및 지원

□ 사업개요

○ 기　　간 : 2월~11월

○ 대　　상 : 1) 기선정·유지 중인 청소년 알바친화사업장
2) 신규 선정 사업장

□ 추진방법

○ 횟　　수 : 4회(사업장 지원 1회, 홍보물 배포 1회, 매체 홍보 1회, 간담회 1회)

○ 방　　법 : 1) 친화사업장 홍보 (광고매체, 리플렛 배포 및 부착)
2) 친화사업장 지원 (현판, 멀티충전기, 상하수도 요금, 종량제봉투)
3) '시장님과 알바친화사업장 사업주와의 대화' 간담회 진행

	21년 선정 기존 사업장 (76곳)	22년 신청 신규 사업장
2월	만족도 조사	
3월		

<table>
<tr><td>4월</td><td colspan="2">홍보물 배포 (청소년 기관, 학교, 주민센터, 길거리 부착 등)</td></tr>
<tr><td colspan="3"></td></tr>
<tr><td>9월</td><td colspan="2">홍보물 제작 (현판, 리플렛, 지도, 멀티충전기, 종량제 봉투)</td></tr>
<tr><td rowspan="3">10월</td><td colspan="2">홍보물 배포 (청소년 기관, 학교, 주민센터, 길거리 부착 등)</td></tr>
<tr><td colspan="2">홍보 (SNS, 버스 등 광고매체를 통한 홍보)</td></tr>
<tr><td>사업장 지원
1. 리플렛, 지도
2. 상하수도 요금
3. 종량제 봉투</td><td>사업장 지원
1. 현판
2. 멀티충전기
3. 리플렛, 지도
4. 상하수도 요금
5. 종량제 봉투</td></tr>
<tr><td>11월</td><td colspan="2">시장님과 사업주님의 간담회</td></tr>
<tr><td>12월</td><td colspan="2">만족도 조사</td></tr>
</table>

4. 초단시간 청소년 노동자 지원금

▢ 사업목적

- ❍ 초단시간 청소년 노동자 지원
- ❍ 초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지원 정책 필요성 공론화

▢ 사업개요

- ❍ 기간 : 6~9월(여름방학 기간 중)
- ❍ 대상 : 광주지역 만16세 이상~만24세 이하 초단시간 청소년노동자
- ❍ 내용 :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는 지원금

▢ 추진방법

- ❍ 방법 : 추첨제

신청자격	① 공고일(7.1.) 전일 기준 만 24세 이하, 주민등록상 광주거주자 ② 21년 7월~ 22년 6월 중 3개월 이상 근무한 자 ③ 주 기준 15시간 미만 근무한 자
구비서류	① 공통: 근무일지 ② 다음 중 택1 - 근로계약서 사본 - 급여통장사본 - 보험가입이력
신청.지원방법	①온라인 신청 ②방문 지원

○ 신청 및 지원 과정

모집공고	➡	신청 접수	➡	서류 확인 및 보완	➡	추첨	➡	방문 지원
7.1.		7월 초		7월 초~중순		7월 말		8월

* 해당 일정은 추후 일부 변동 가능

○ 횟수 : 1회
○ 인원 : 60명

상담 및 법률지원

5. 청소년 노동인권을 위한 알바지킴이상담센터 운영

□ 사업목적
○ 광주지역 청년·청소년 알바 노동자의 권리보호
○ 청년·청소년 알바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
○ 지역 청년·청소년에게 노동인권센터 인지도 향상을 통한 방문 빈도 증가

□ 사업개요
○ 기　　간 : 1월~12월(연중)
○ 장　　소 : 광주광역시
○ 대　　상 : 광주광역시 청년·청소년 노동자
○ 내　　용 : 알바지킴이상담센터 운영 및 홍보, 권리구제 활동, 상담결과 정리

□ 추진방법
○ 방　　법 : 온라인(카카오톡, 화상) 및 오프라인 상담
○ 횟　　수 : 600회 (월 평균 50회)
○ 인　　원 : 480명 (월 평균 40명)

6. 영세 사업주 대상 인사·노무 컨설팅 (마을노무사)

□ 사업목적

○ 광주지역 청소년 시설 기관의 인사 제도 정비를 통해 청소년 대상자에게 안정된 서비스 제공

○ 노동법을 준수하고자 하나 비용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사업주 지원

□ 사업개요

○ 기　　간 : 3월 ~ 12월

○ 장　　소 : 광주광역시

○ 대　　상 : 1) 청년·청소년 고용 사업장 사업주 (10인 미만 사업장)
2) 청소년 시설·기관

○ 내　　용 : 근로기준법을 준수할 의사가 있는 사업주 및 기관장을 대상으로 기초 인사노무 컨설팅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대장 작성 등)

□ 추진방법

○ 방　법 : 영세 사업주 대상 컨설팅 진행 (진단/방안제시/사후점검)

유관기관 접촉	➡	사업주 모집 공고	➡	마을 노무사 신청	➡	집중 컨설팅 2회 1회차) 현황 진단 2회차) 개선방안 제시	➡	컨설팅 결과 수합 및 분석
3월		4월 8월		5월 9월		6~7월 10~11월		12월

○ 횟수 및 인원 : 40회 (20곳×2회 컨설팅), 20명(사업주 기준)

○ 협력기관: 외식업중앙회, 상인회 등

교육

7. 찾아가는 노동인권 교육

□ 사업목적

○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인권 교육 및 의식 함양

□ 사업개요

○ 기　　간 : 1월~12월

○ 장　　소 : 광주지역 내 기관·단체
○ 대　　상 : 광주지역 청소년 동아리, 청소년교육기관, 청소년단체 (10명 내외)
○ 내　　용 :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교안 개발 및 교육
1) 노동인권 감수성
2) 노동의 의미와 가치
3) 노동 관련 법률과 피해구제방법

□ 추진방법
○ 방법 : 청년 강사 운영(2명)
노동인권 관련 동아리 접촉, 청소년 교육기관·단체 신청 접수
○ 횟수 : 10회
○ 인원 : 50명(교육 10회*5명)

□ 활동계획

기간	내용	비고
2월, 5월, 10월	교안 회의	
3월~11월	신청 접수 및 교육	
12월	평가 회의	

8. 청소년노동인권교육 프로그램 연구 및 콘텐츠 제작

□ 사업목적
○ 청소년노동인권 프로그램 연구 및 콘텐츠 제작

□ 사업개요
○ 기　　간 : 1월~12월
○ 대　　상 : 광주지역 청소년
○ 내　　용 : 교육 대상별 프로그램 커리큘럼 연구
교육 대상별 콘텐츠 제작

□ 추진방법
○ 방법 : 커리큘럼 기획.자문단 운영
○ 횟수 : 6회(대상별 프로그램 커리큘럼 연구 3회, 콘텐츠 개발 3회)
○ 인원 : 8명(자문 인원 5명, 전문가 분야별 1인*3명)

9. 청소년노동인권교육 강사단 역량강화 교육

□ 사업목적

○ 청소년노동인권 강사단 전문성 신장
○ 청소년노동인권 강사단 안정적 운영

□ 사업개요

○ 기　　간 : 2월~12월
○ 장　　소 : 광주YMCA
○ 대　　상 : 광주지역 청소년노동인권 강사
○ 내　　용 : 전문적인 역량강화 교육

□ 추진방법

○ 방　　법 : 강의
○ 횟　　수 : 6회
○ 인　　원 : 20명

10. 청소년시설기관 인사.노무교육

□ 사업목적

○ 청소년기관 간 상호협력체계 구축
○ 인사노무제도를 정비하여 청소년 대상자에게 안정된 서비스 제공
○ 청소년시설기관 노동인권 의식 함양

□ 사업개요

○ 기　　간 : 2월~12월
○ 대　　상 : 청소년시설기관 기관장 또는 인사.노무 담당자
○ 내　　용 : 인사노무교육

□ 추진방법

○ 방　　법 : 강의
○ 횟　　수 : 2회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 인　　원 : 20명 (상반기 10명, 하반기 10명)
○ 내　　용 :

회기	내용
1강	근로기준법 실무 (근로시간, 연차휴가, 휴직제도, 임금 산정 등)
2강	기타 노동법 실무 (4대보험, 실업급여, 퇴직연금, 직장 내 괴롭힘 등)

11. 청소년노동인권 동아리 운영

□ 사업목적

○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원하는 노동을 상상하고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함.

□ 사업개요

○ 기　　간 : 7월~9월

○ 대　　상 : 광주지역 청소년

○ 내　　용 : 청소년 노동인권 동아리 운영

□ 추진방법

기간		내용
모집	7월 셋째주	모집
동아리 운영	8월 1째주	OT 및 노동인권 감수성 교육
	8월 2째주	주제선별 예시) 택배노동자는 왜 과로사할까?
	8월 3째주	노동인권 실태 스터디
	8월 4째주	노동인권 실태 스터디
	9월 1째주	해결방안 모색
	9월 2째주	해결방안 모색
	9월 3째주	<실천행동> 운영방법 모색
	9월 4째주	<실천행동> 진행
수료식	9월 5째주	수료식 진행

○ 횟　　수 : 8회 (동아리 운영 7회, 실천행동 1회)

○ 인　　원 : 5명

홍보

12. 청소년노동인권센터 홍보

□ 사업목적

○ 청소년 노동 문제 해결 및 여론 조성

○ 청소년 노동자의 권리구제 기회 참여 확대

□ 사업개요

○ 기　　간 : 1월~12월

○ 장　　소 : 광주광역시

○ 대　　상 : 광주지역 청소년 및 광주 시민

○ 내　　용 : 광주광역시 청소년노동인권센터 홍보

□ 추진방법

○ 방　　법

구분	내용	비고
SNS 운영	· 노동상식 게재(주1회) · 센터 활동 소식 게시(주1회) · 청소년 노동 주간 뉴스(주1회) · 센터 사업 웹자보 게재(연4회) ·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메시지 발송(연12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등
홍보 광고	· 유료 홍보 광고(연10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10회 · 현수막 게첨(연2회)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페이스북

13. 청소년노동인권 캠페인

□ 사업목적

○ 일하는 청소년(알바 노동, 현장 실습, 배달 노동자 등)의 인권 향상을 위한 광주 내 사회적 여론 조성

○ 청소년 노동자의 노동인권 의식 향상

□ 사업개요

○ 기　　간 : 2~12월

○ 장　　소 : 광주광역시

○ 대　　상 : 광주지역 청소년 및 광주 시민

○ 내　　용 :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캠페인 진행

□ 추진방법

○ 방　　법

구분	내용	횟수
오프라인	청소년 노동자 인권 향상을 위한 캠페인 (사회적 인식 개선, 현장실습 관련, 노동상식 안내 등)	10회
온라인	청소년 노동 인권 관련 인증 사진(팻말, 손글씨 등) 업로드	

14. 청소년노동인권센터 홍보 서포터즈 활동

□ 사업목적

○ 센터 사업 홍보를 통해 청소년 당사자의 참여 확대

○ 노동 의제를 통해 센터를 홍보하기 위한 자체 사업 추진

□ 사업개요

○ 기　　간 : 2월~12월

○ 장　　소 : 광주광역시

○ 대　　상 : 광주지역 청소년

○ 내　　용 : 광주광역시 청소년노동인권센터 홍보

□ 추진방법

○ 방　　법

- 서포터즈 활동 1명당 6회(카드뉴스 또는 영상 제작)

○ 횟　　수 : 26회(카드뉴스 활동 24회(6명*4회), 영상제작 활동(※6명공동제작) 2회)

○ 인　　원 : 6명(서포터즈 6명)

15. 청소년노동인권센터 사업결과 발표회

□ 사업목적

○ 광주지역 청년·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 유도

○ 청소년노동인권센터 센터 실적 보고

□ 사업개요

○ 기　　간 : 11월~12월

○ 장　　소 : 광주광역시

○ 대　　상 : 청년·청소년 기관 및 단체, 광주지역 언론, 광주지역 시민

○ 내　　용 : 사업 결과 발표회, 언론 홍보

□ 추진방법

○ 횟　　수 : 1회

○ 인　　원 : 30명 (참석 인원 기준)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정관

개정 2021.2.26.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회는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사업을 전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 회는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라 칭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본 회는 광주광역시에 둔다.

제4조(사업) 본 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① 교육사업 : 청소년노동인권과 관련된 교육 자료 개발 및 강사단 양성
② 상담사업 : 법률지원단을 통한 상담 및 법률대리
③ 홍보사업 : 청소년노동인권 관련 캠페인
④ 연구사업 : 청소년노동인권 의식 및 실태조사
⑤ 정책사업 : 청소년노동인권 관련 정책 연구
⑥ 기타사업 : 본회의 설립 목적과 부합하는 사회적 요구 사업

제 2 장 조 직

제5조(조직 구성) 회원은 청소년노동인권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는 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제6조(조직의 가입 및 탈퇴)
① 신규 단체 가입은 임원의 추천을 받아 확대집행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가입한다.
② 가입 단체는 자유로이 본 회를 탈퇴할 수 있다. 다만, 탈퇴 시 확대집행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 3장 의결 기구 및 대표단

제7조(의결 기구의 종류) 본 회의 의결기구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정기확대집행위원회, 임시확대집행위원회로 한다.

제8조(의결 기구의 기능)
① 본 회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자산의 취득, 처분과 관한 사항
② 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
③ 본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④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⑤ 사업에 관한 사항

⑥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⑦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집행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9조(회기)
① 정기총회 : 매년 1회 소집
② 확대집행위원회 : 매월 1회 소집을 원칙으로 하나, 특별한 안건이 없는 경우 익월에 실시한다.
③ 임시확대집행위원회 : 임원의 결의 또는 운영위원 과반수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집행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0조 (총회)
① 총회는 최고 의결기관으로 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고 집행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집행위원장 또는 감사 및 재적회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집행위원장은 총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7일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의 1(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위임을 포함한)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총회 의결권은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명으로 위임할 수 있다. 단, 위임참석은 참석회원 과반을 넘을 수 없다. 위임장은 총회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의 2(의결사항) 정기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집행위원장의 임면 및 확대집행위원의 임면과 감사의 선출과 해임
2. 단체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사업계획의 승인
5. 기타 중요사항

제10조의 3(회의록) 총회 등 각 단위의 의사 진행 경과와 결과는 회의록으로 작성해야 하며 의장 등 참여 임원이 기명날인한다.

제11조(확대집행위원회 구성 및 소집)
① 확대집행위원회는 가입단체의 대표 6인와 개인회원 6인, 집행위원 6인으로 구성하며, 총회에서 선임한다. 확대집행위원회는 집행위원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확대집행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 공간에 소집내용을 게시하였거나 위원 전원이 집회하고, 또 그 전원이 확대집행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확대집행위원회는 제 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 운영위원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11조의 1(의결 정족수) 확대집행위원회의 의결정족수 등 사항은 제9조의 2에 준한다.

제11조의 2(확대집행위원회 소집의 특례)

① 집행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확대집행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위원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 2. 감사가 회의를 소집을 요구할 때

② 확대집행위원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확대집행위원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확대집행위원회의 운영은 출석위원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11조의 3(서면 결의금지) 확대집행위원회의 의사는 서면 의결에 의할 수 없다.

제12조(감사) 본 회를 위하여 감사 2인을 둔다.

감사는 확대집행위원회 추천을 통해 총회에서 선출하며 본 회 각 단위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제12조의 1(감사의 업무)

① 감사는 일반회계 및 운영에 대해 감사하며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을 경우 확대집행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하고 그 보고를 위하여 확대집행위원회 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감사는 감사결과 하자가 드러나면 관련 위원의 해임을 집행위원장에게 건의할 수 있으며, 집행위원장은 관계 위원의 해임을 확대집행위원회에 부의하고 그 결과를 감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4 장 집행위원회

제13조(집행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의 회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집행국을 둘 수 있다.

① 집행위원장 : 1인
② 교육국장 : 1인
③ 정책국장 : 1인
④ 상담국장 : 1인
⑤ 사무국장 : 1인
⑥ 부설기관장 : 각1인

제14조(법률지원단) 법률지원단을 두어 상담 및 법률지원을 할 수 있게 한다.

제15조(집행위원의 선임 방법)

① 집행위원장은 정기총회에서 본 회 가입단체 회원 중 본 회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인 중에 선출한다.

② 감사를 제외한 집행위원은 집행위원장이 추천하되 총회의 동의를 얻는다.

③ 집행위원의 해임은 확대집행위원회의 의결에 의한다.

제16조(집행위원의 임기) 집행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17조(집행위원의 직무 및 집행위원회의)

① 집행위원장은 본 회를 대표한다.
② 각 집행국은 본회의 운영을 위한 계획 집행일체를 보좌한다.
③ 각 집행국장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며 본 회의 업무상 필요한 경비를 판공비로 지출 할 수 있다. 다만, 센터 소임활동의 경우는 센터 급여체계에 따른다.
④ 집행위원회의 : 집행위원장 또는 집행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집행위원장이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 5 장 재 정

제18조(경비 조달 방법) 본 회의 재정은 회비, 단체분담금 및 찬조금, 후원회비,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

제19조(회비 납부 방법) 본 회의 회비는 월별 납부를 원칙으로 하며, 매월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단체분담금은 단체별 재정 상황에 따르되 매년 총회에서 결정한 금액으로 정하기로 한다.

제20조(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1조(예산 및 결산)
① 회계의 예산과 결산은 매년 초 정기총회를 통해 보고하고 승인한다.
② 단체의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공개한다.

제 6 장 부설기관 등

제22조(부설기관 등)
본 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단 기관운영의 경우 별도의 규정을 둔다.

제 7 장 상 벌

제23조(상) 본 회의 발전에 공헌한 회원 및 기타 정기총회에서 시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회원에게 시상할 수 있다.

제23조의 1(벌)
① 본회의 명예를 손상하거나 목적에 위배된 행위를 한 회원은 정기총회의 2/3이상 동의를 얻어 제명한다.
② 특별한 사유나 통고 없이 6개월 이상 출석하지 않은 회원은 제명하며, 특별한 사유에 관련하여 회원존속 여부는 확대집행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 8 장 보 칙

제24조(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운영위원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4조의 1(해산)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하고. 해산 시 잔여재산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하도록 한다.

제24조의 2(운영규정) 이 정관 규정 이외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확대집행위원회 의결로 별도의 규정을 두어 정한다.

제25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확대집행위원회를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 9 장 부 칙

본 정관은 2009년 10월 30일부터 발효한다.
중략.
본 정관은 2016년 1월 27일 개정한 날부터 발효한다.
본 정관은 2017년 2월 21일 개정한 날부터 발효한다.
본 정관은 2018년 3월 20일 개정한 날부터 발효한다.
본 정관은 2019년 2월 22일 개정한 날부터 발효한다.
본 정관은 2020년 3월 17일 개정한 날부터 발효한다.
본 정관은 2020년 11월 19일 개정한 날부터 발효한다.
본 정관은 2021년 2월 26일 개정한 날부터 발효한다.

<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강사단 규정 >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의 강사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 제반에 관한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하다.

제2조 (활동)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강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활동을 한다.
1. 교육활동 : 청소년노동인권과 관련한 교육자료 개발
2. 상담활동 : 청소년들을 위한 노동인권 상담 진행(학교 내외 상담)
3. 홍보활동 :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 캠페인 참여
4. 기타활동 :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의 설립 목적과 부합 하는 사회적 요구사업

제2장 강사 및 대표단

제3조 (강사 구성)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의 회원으로서, 강사 양성 과정을 이수한 자는 강사가 될 수 있다.

제4조 (강사의 권리와 의무)
① 강사는 전체 회의를 통하여 강사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광주청소년인권노트워크는 강사 간의 차등 및 차별을 두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
③ 강사는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의 정관, 규정 및 각종 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회비 및 제 부담금을 납부 할 의무를 진다.
④ 강사는 '광주노동인권네트워크 강사단'이 진행하는 보수교육 및 각종 회의, 캠페인에 참석하여야 한다.

제5조 (강의 배정)
① 강사는 아래 표에 제시된 기준의 70% 이상 이수할 때 강의 배정 자격을 획득하며, 70% 미만일 때는 강의 배정 자격을 상실한다.

강사 활동 이수 기준표			기간 : 1년
활동	보수교육	운영회의(평가회의)	전체회의
횟수	6회	5회	1회
퍼센트	회당 8%	회당 8%	12%

② 강의 배정 자격이 상실한 강사의 경우, 아래의 강사 활동 기준을 70% 이상 이수하면, 강의 배정 자격을 회복한다.

강사 활동 이수 기준표			기간 : 6개월
활동	보수교육	운영회의	평가회의(전체회의)
횟수	3회	2회	1회
퍼센트	회당 16%	회당 16%	20%

제6조 (강사의 탈퇴 및 징계)
① 강사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강의를 중단할 수 있다. 단, 교육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1개월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강사가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이 되는 경우는 징계위원회를 거쳐 징계할 수 있으며, 징계위원회는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집행부와 강사단이 함께 구성한다.
1. 강사의 품위를 손상하고 목적수행에 지장을 현저히 초래한 경우
2. 3회 이상 강사의 회비 납부 및 참석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자

제7조 (대표단의 구성) 이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강사단은 다음의 대표단을 둔다.
① 강사단 대표 1인, 부대표 1인, 교육안 개발팀장 1인, 교육기획팀장 1인을 둔다.
② 그 외 강사단의 사업 운영에 필요한 대표단을 둘 수 있다.

제8조 (대표단의 선임)
① 강사단 대표 및 대표단은 매년 1월에 전체회의를 통해 선출한다.
② 대표단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로 하여야 한다.

제9조 (대표단의 해임) 대표단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전체회의의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
1. 강사단의 목적에 위배 되는 행위
2. 대표단 간의 분쟁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강사단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0조 (대표단의 임기)
① 대표단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② 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대표단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0조 (대표단의 직무)
① 강사단 대표는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강사단을 대표하고 강사단 업무를 총괄하며 전체회의 및 평가회의 의장이 된다. 강사단 대표 유고 시에는 미리 강사단이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대표는 강사단 회의를 통하여 강사단의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와 논의 후 처리한다.
③ 대표는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의 회의를 참석하여야 한다.

제3장 강사단 평가회의 및 전체회의

제11조 (운영회의 및 전체회의 소집)

① 운영회의는 정기 및 임시로 구분하며 강사단 대표가 소집한다.
② 정기 운영회의는 격월로 소집하며 임시 운영회의는 대표나 대표단 또는 강사들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제12조 (의결정족수) 운영회의는 강사단 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전체회의)
① 전체회의는 최고 의결기관으로 전 강사로 구성하며 정기전체회의와 임시전체회의가 있고 강사단 대표가 소집한다.
② 정기전체회의는 매년 1월에 진행하며 임시전체회의는 대표 또는 대표단 및 강사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단, 재난 및 전염병 유행 등의 상황 시 연기할 수 있다.
③ 대표는 전체회의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일 7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 (의결정족수)
① 강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되며 출석강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 (전체회의의 의결사항) 전체회의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대표단의 선출과 해임
2. 강사단의 해산 및 규정 변경에 관한 사항
3. 강사단 운영에 대한 중대한 사안의 발생

제16조 (회의록) 운영회의 및 전체회의의 의사 진행 경과와 결과는 회의록으로 작성해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20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2020년 10월 21일

광주광역시청소년노동인권센터

운 영 규 정

광주광역시청소년노동인권센터

광주광역시청소년노동인권센터 운영규정

제정 : 2016년 4월 18일
개정 : 2016년 10월 31일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가 광주광역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광주광역시청소년노동인권센터'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 제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위탁기관의 명칭은 '광주광역시청소년노동인권센터' (이하 '청소년노동인권센터')라 한다.

제3조(법적지위) 청소년노동인권센터의 법적 지위는 광주광역시의 청소년노동인권센터 업무의 민간위탁기관으로서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의 부설기관으로 한다.

제4조(조직구성) 청소년노동인권센터는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구성할 수 있다.
1. 운영위원회
2. 센터장
3. 자문위원회
4. 업무부서(정책연구, 노동 상담 및 법률지원, 교육홍보, 지원.연대 등)

제5조(사무실) 광주광역시가 제공하는 곳으로 광주광역시 관할 내에 둔다.

제2장 운영위원회

제6조(구성) 청소년노동인권센터의 설치목적 수행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문구수정 2016. 10. 31.]

① 운영위원회는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6. 10. 31.]
② 청소년노동인권센터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운영위원장은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이 된다. [문구수정 2016. 10. 31.]
④ 청소년노동인권센터의 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은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의 운영위원회로 갈음한다. [문구수정 2016. 10. 31.]

제7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심의 . 의결한다.
1. 청소년노동인권센터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사업평가 및 결산(안)에 관한 사항
2. 청소년노동인권센터의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필요한 제반 사항

제3장 센터장

제8조(선임) 센터장은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집행위원장이 선임 한다.

제9조(역할) 센터장은 청소년노동인권센터 전반의 업무를 총괄하고 책임진다.

제10조(임기) 센터장의 임기는 1회 위탁기간을 기본으로 하고 재 위탁 시 연장할 수 있다.

제4장 자문위원회

제11조(구성) 청소년노동인권센터 사업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
① 자문위원은 11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자문위원회는 청소년계, 노동계, 노동학계외 법조계, 노동청과 중소기업청 등 유관기관, 경총과 상공회의소 등 각계의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로 구성한다. [개정 2016. 10. 31.]

③ 자문위원은 각계의 추천으로 센터장이 위촉한다.

제12조(역할) 청소년노동인권센터의 업무를 전문적인 지식이나 식견으로 자문한다.

제13조(임기) 자문위원의 임기는 1회 위탁기관으로 하고 재위탁시 연장할 수 있다.

제5장 업무부서

제14조(구성) 센터장은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하여 정책연구, 노동 상담 및 법률지원, 교육.홍보, 지원.연대 등의 업무부서를 설치하고 업무 담당직원을 둘 수 있다.

제15조(역할) 업무부서의 담당자는 청소년노동인권센터의 목적달성을 위해 해당 업무를 수행한다.

제16조(임기) 임기는 1회 위탁기간으로 하고 재위탁시 연장할 수 있다.

제6장 시설의 운영 및 관리

제17조(관리의 범위와 주체)
① 청소년노동인권센터의 시설의 관리 범위는 광주광역시로부터 제공받은 업무공간과 그에 수반되는 시설 일체로 한다.
② 건물 및 시설과 관련한 임대계약, 관리계약 등에 대한 법적 주체와 책임자는 청소년노동인권센터의 장이 된다. [문구수정 2016. 10. 31.]

제7장 인원채용과 제반규정

제18조(채용)

① 상근직의 채용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용한다. [문구수정 2016. 10. 31.]
② 상근직의 채용은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③ 상근직은 운영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센터장이 채용한다. [일부삭제 2016. 10. 31.]
④ 자원봉사자 등 별도의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성격의 업무 위촉은 센터장의 재량으로 한다.

제19조(제반 규정) 청소년노동인권센터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별도의 취업규칙을 둘 수 있다.

제8장 회계

제20조(회계)
① 청소년노동인권센터의 수입 및 지출은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의 일반예산과 구분하여 독립된 회계를 둔다.
② 청소년노동인권센터의 회계는 광주광역시와 협의해 별도의 회계 규정을 둘 수 있다.
③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9장 기타

제21조(기타) 운영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적인 규범에 따른다.

제10장 부칙

제22조(시행일) 이 규정은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운영위원회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